2022.2.

국회예산정책처 I 재정추계&세제 이슈 I 제18호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NABO Fiscal Estimates & Tax Issues

CONTENTS

재정추계&세제 분석 | 2022년 달라지는 복지분야 주요 사업 재정소요 추계
2022년 달라지는 조세제도
국세수입 예·결산 차이 원인 분석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의 인상률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

재정추계&세제 이슈 | 코로나19 이후 조세정책에 대한 논의 동향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세제 및 재정지원 동향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영국편-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Fiscal Estimates & Tax Issues

재정추계&세제 이슈

2022년 Vol.1 통권 제18호

Contents

재정추계&세제 동향 3

2021년 4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4

2021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15

재정추계&세제 분석 21

2022년 달라지는 복지분야 주요 사업 재정소요 추계 22

2022년 달라지는 조세제도 36

국세수입 예·결산 차이 원인 분석 44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의 인상률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 55

재정추계&세제 이슈 63

코로나19 이후 조세정책에 대한 논의 동향 64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세제 및 재정지원 동향 73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영국편- 86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99

“본 원고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추계&세제 동향

2021년 4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1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2021년 4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문 지 은 · 박 정 환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45, 4835)

2021년 4분기 가결 법률 270건 중 재정수반법률은 100건*(전체의 37.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 21건, 지출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 82건
- 수입법률 16건 및 지출법률 35건 등 51건에 대한 추계 결과 제시

수입법률 16건 시행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6조 8,283억원 수입 감소 예상**

- 국가: 연평균 9조 2,524억원 수입 감소 예상, 지방: 연평균 2조 4,242억원 수입 증가 예상

지출법률 35건 시행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4조 2,357억원 지출 증가 예상

- 국가: 연평균 3조 3,289억원, 지방: 연평균 9,068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수입·지출 동시유발법률 3건 포함

** 추계금액은 2022~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금액으로 제시

1. 2021년 4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수반법률 현황

2021년 4분기 국회는 270건의 법률을 가결하였으며, 이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전체의 37.0%인 100건

● 이 중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51건의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수입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은 16건[1], 지출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은 35건[2]

1) 수입 16개 법률 중 세수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은 143개(수입증가 11개, 수입감소 132개 요인)

2) 지출 35개 법률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은 60개(지출증가 59개, 지출감소 1개 요인)
추계액이 미미하거나, 시행령 개정,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나타나지 않아 현시점에서 추계가 곤란한 49건은 제외하였으며, 미추계건 중 법안 가결 이후 정부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건은 「2021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2022년 발간예정)에서 추계규모 제시 예정

표 1 2021년 4분기 가결 재정수반법률 현황

(단위: 건)

가결 법률	재정수반법률 (추계)[1]		
	소계	수입법률	지출법률
270	100[2] (51)	21 (16)	82 (35)

주: 1) ( )안은 추계가 곤란하거나 추계액이 미미한 49건을 제외하고 재정소요를 점검한 법률 수
2) 수입·지출 동시유발법률 3건 포함

자료: NABOSTATS-간략조회-재정통계-가결법률의 재정소요점검-가결 재정수반법률 현황

그림 1 2021년 4분기 재정소요점검 대상 법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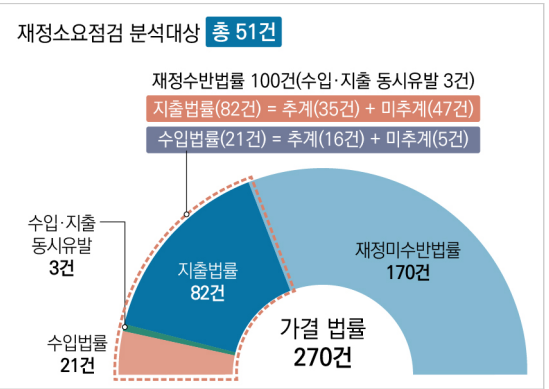

● (위원회별) 2021년 4분기 재정수반법률이 가장 많이 가결된 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각각 14건), 행정안전위원회(12건) 순

➢ 재정수반법률 비중이 높은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72.7%), 교육위원회(71.4%), 기획재정위원회(70.0%) 순

그림 2 2021년 4분기 위원회별 가결 법률과 재정수반법률 현황 및 가결 법률 대비 재정수반법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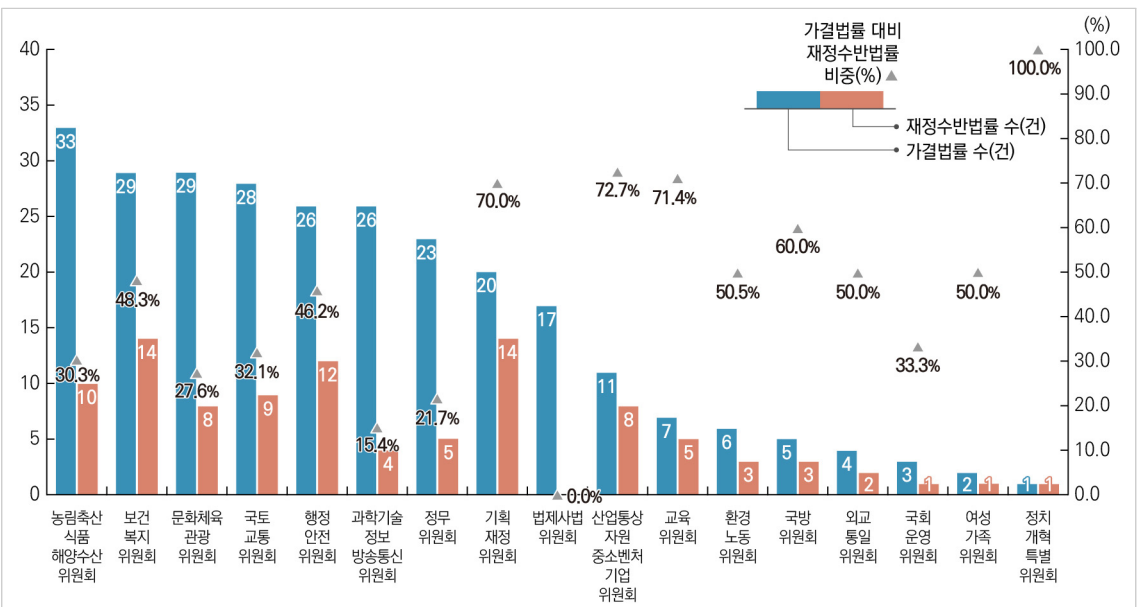

2. 2021년 4분기 가결 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가. 수입 부문

2021년 4분기에 가결된 수입법률 중 추계가 가능한 16건 시행으로 2022년부터 5년간 연평균 6조 8,283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

표 2 2021년 4분기 가결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구분			재정주체별		수입합계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입 유형별	조세수입		-92,524 (-50,229)[1]	24,242 (-18,054)[1]	-68,283
	국세외수입	기금수입	-	-	-
		세외수입	-	-	
합 계			-92,524 (-50,229)[1]	24,242 (-18,054)[1]	-68,283

주: 1) ( )안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을 제외한 세수효과
1.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향후 5년간(2022~2026년) 연평균 금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수입유형별) 수입변동은 조세수입이 연평균 6조 8,28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 조세수입: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고용분야 세제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16건의 법률 시행으로 연평균 6조 8,283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
    * 16건의 법률 중 세수효과가 존재하는 143개 재정수반요인(수입증가 11개, 수입감소 132개 요인)의 추계결과
- (재정주체별) 국가 수입은 연평균 9조 2,524억원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입은 2조 4,242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단, 부가가치세 중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국세수입 감소분만큼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증가하므로(연평균 국가 수입 4조 2,295억원 감소, 지방자치단체 수입 4조 2,295억원 증가), 이를 제외하면 국가 수입은 연평균 5조 229억원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입은 1조 8,05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 국가 수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 신설, 고용증대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13건 법률 시행으로 연평균 9조 2,524억원 수입 감소 예상
  - ➤ 지방자치단체 수입: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2건 법률 시행으로 연평균 1조 8,054억원 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증가를 수반하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연평균 4조 2,295억원 수입 증가가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연평균 2조 4,242억원 수입 증가가 예상

- (위원회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재정수반법률에 따라 재정수입은 연평균 9조 2,524억원 감소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재정수반법률에 따라 재정수입은 연평균 2조 4,242억원 증가
  - ➢ 국세 관련 세법은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세 관련 세법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서 국세수입의 재정주체별 구분과 위원회별 구분이 동일
  - ➢ 단, 부가가치세 중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하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의 재정수입은 연평균 5조 229억원 감소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의 재정수입은 1조 8,054억원 감소

표 3 2021년 4분기 가결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위원회별

위원회	소계 (A+B, 건)	추계		미추계
		건수 (A, 건)	수입변동 (연평균,[1] 억원)	건수 (B, 건)
기획재정위원회	14	13 [77][2]	-92,524 (-50,229)[3]	1
행정안전위원회	4	3 [54][2]	24,242 (-18,054)[3]	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	0	-	3
합 계	21	16 [131][2]	-68,283	5

주: 1) 향후 5년간(2022~2026년) 연평균 금액
2) [ ]안은 각 위원회별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수반요인 개수
3) ( )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를 제외한 금액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미추계건수는 모든 재정수반조문을 추계하지 못한 건을 의미
자료: NABOSTATS-간략조회-재정통계-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가결 재정수반법률 결과(위원회별)

나. 지출 부문

2021년 4분기에 가결된 지출법률 중 추계가 가능한 35건 법률 시행으로 2022년부터 5년간 연평균 4조 2,357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표 4 2021년 4분기 가결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구분		재정주체별		지출 (연평균[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출 유형별	의무지출	15,847	6,293	22,140 (52.3%)
	재량지출	17,441	2,776	20,217 (47.7%)
합계		33,289 (78.6%)	9,068 (21.4%)	42,357 (100.0%)

주: 1) 향후 5년간(2022~2026년) 연평균 금액
1.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 )안은 전체 중 각각의 비중을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출유형별) 의무지출이 연평균 2조 2,140억원(52.3%), 재량지출이 연평균 2조 217억원(47.7%)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의무지출: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아동수당법」 개정 등 2건 법률 시행으로 연평균 2조 2,140억원 지출 증가 예상
  - ➤ 재량지출: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출생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등 33건 법률 시행으로 연평균 2조 217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재정주체별) 국가 지출은 연평균 3조 3,289억원(78.6%), 지방자치단체 지출은 연평균 9,068억원(21.4%) 증가할 것으로 예상[3)]
  - ➤ 국가의 재정부담 중 인구가 줄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게 위해 시·도에 설치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등 33건 법률 시행으로 연평균 3조 3,289억원 지출 증가 예상
  - ➤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중 저소득 근로 청년에 대한 사회투자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대상을 확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등 7건 법률 시행으로 연평균 지방비 9,068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위원회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지출법률에 따른 재정소요가 연평균 2조 8,190억원으로 가장 많고, 행정안전위원회(연평균 1조 1,480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연평균 1,471억원) 순으로 지출에 영향
  -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아동수당 연령 확대 및 지급액 인상 등(「아동수당법」 등 6건, 연평균 2조 8,190억원)
  -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 등(「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2건, 연평균 1조 1,480억원)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도입(「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6건, 연평균 1,471억원)

표 5 2021년 4분기 가결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위원회별

위원회	소계 (A+B, 건)	추계		미추계
		건수 (A, 건)	추가재정소요 (연평균,[1)] 억원)	건수 (B, 건)
국회운영위원회	1	0	-	1
법제사법위원회	-	-	-	-
정무위원회	5	5	645	0
기획재정위원회	-	-	-	-
교육위원회	5	3	237	2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변동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5건 포함

위원회	소계 (A+B, 건)	추계		미추계
		건수 (A, 건)	추가재정소요 (연평균,[1] 억원)	건수 (B, 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	1	20	3
외교통일위원회	2	1	29	1
국방위원회	3	3	31	0
행정안전위원회	9	2	11,480	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8	3	78	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0	6	1,471	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7	2	172	5
보건복지위원회	14	6	28,190	8
환경노동위원회	3	0	-	3
국토교통위원회	9	2	4	7
정보위원회	-	-	-	-
여성가족위원회	1	1	0.3	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	0	-	1
합 계	82	35	42,357	47

주: 1) 향후 5년간(2022~2026년) 연평균 금액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미추계건수는 모든 재정수반조문을 추계하지 못한 건을 의미
자료: NABOSTATS-간략조회-재정통계-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가결 재정수반법률 결과(위원회별)

3. 2021년 4분기 가결 재정수반법률 주요 사례

[주요 사례: 수입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위원장, 2021.12.2. 의결)

- 고용증대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 신설 등에 따라 연평균 4조 6,452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2022.1.1. 시행)
  - ➢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년간 감면혜택(중소·중견기업 3년, 대기업 2년)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여, 기업규모별 감면실적을 구분하여 추산한 후, 취업자수 증가율 전망을 적용하여 추정
  - ➢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신성장·원천기술 R&D 공제실적을 바탕으로 명목지식재산생산물 투자액 증가율 전망을 적용하여 추정

표 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수입 변동: 2022~2026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고용증대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77	-6,380	-12,639	-17,716	-16,557	-53,369	-10,674
신성장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6,446	-6,835	-7,228	-	-20,509	-4,102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 신설	-2,610	-5,409	-5,750	-5,873	-	-19,642	-3,928
기타[1]	-31,451	-42,403	-20,617	-20,283	-23,998	-138,742	-27,748
합 계	-34,138	-60,638	-45,841	-51,100	-40,545	-232,262	-46,452

주: 1) 기타 재정수반요인에는 농림어민이 농림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 간접세(개별소비세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을 포함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위원장, 2021.12.2. 의결)

-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단계적 확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특례 확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특례기간 연장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제외대상 확대 등에 따라 연평균 4조 4,770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2022.1.1. 시행)
  - ➤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효과(현행 21% → '22년 23.7% →'23년 이후 25.3%)는 NABO 부가가치세 전망치를 바탕으로 추산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특례 연장 세수효과는 2020년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실적 등을 반영

표 7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수입 변동: 2022~2026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26,961	-43,722	-45,284	-46,901	-48,608	- 211,476	-42,295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특례 연장	-4,375	-4,450	-	-	-	-8,825	-1,765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1,126	-1,124	-	-	-	-2,250	-450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제외대상 확대	-1,085	-	-	-	-	-1,085	-217
기타[1]	4	-88	-89	-43	2	-214	-43
합 계	-33,543	-49,384	-45,373	-46,944	-48,606	-223,850	-44,770

주: 1) 기타 재정수반요인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이 포함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위원장, 2021.12.2. 의결)

-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을 한시 상향('21년 5%p),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신설 등에 따라 연평균 637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2022.1.1. 시행)
  - ➢ 기부금 세액공제는 2019년 귀속 기준 총급여 규모별 '1인당 추가 세액공제금액'에 적용 인원을 곱하여 추산하고,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1인당 납세조합 공제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해당 소득구간 인원을 곱하여 추산

표 8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수입 변동: 2022~2026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한시상향	-3,223	-	-	-	-	-3,223	-645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36	36	36	-	-	108	22
기타[1]	2	-14	-20	-23	-17	-72	-14
합계	-3,185	22	16	-23	-17	-3,187	-637

주: 1) 기타의 재정수반요인에는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정 등이 포함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위원장, 2021.12.9. 의결)

- 매매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의 취득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에 따라 연평균 1조 8,845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2022.1.1. 시행)
  - ➢ 매매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의 취득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매매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실적에 최근 감면실적 추이를 반영하여 추정
  - ➢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실적에 최근 감면실적 추이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추정

표 9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수입 변동: 2022~2026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0,527	-10,527	-10,527	-	-	-31,581	-6,316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7,617	-7,648	-7,728	-	-	-22,993	-4,599
학교 등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4,098	-4,264	-4,438	-	-	-12,800	-2,560
기타[1]	-9,726	-9,031	-7,941	-76	-76	-26,850	-5,370
합 계	-31,968	-31,470	-30,634	-76	-76	-94,224	-18,845

주: 1) 기타 재정수반요인에는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이 포함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사례: 지출법률]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위원장, 2021.12.2. 의결)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출생초기 양육비용 부담 경감 및 가정양육과 시설 보육 사이에서 부모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을 지원함에 따라 연평균 2조 684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2022.1.1. 시행)
  - ➢ 추계대상 만 7세 및 0~1세 아동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21.12.9)에서 추출하고, 기존 사업별 지급실적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산

표 10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2세 미만 아동 영아수당 지급	5,452	15,657	16,938	20,878	21,695	80,620	16,124
- 국비	3,731	10,715	11,592	14,289	14,848	55,176	11,035
- 지방비	1,721	4,941	5,346	6,589	6,847	25,444	5,089
8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5,239	5,100	4,573	4,112	3,776	22,800	4,560
- 국비	3,856	3,753	3,366	3,027	2,779	16,781	3,356
- 지방비	1,383	1,346	1,207	1,086	997	6,019	1,204
합 계	10,691	20,755	21,511	24,991	25,471	103,419	20,684
- 국비	7,587	14,468	14,958	17,316	17,627	71,956	14,391
- 지방비	3,104	6,287	6,553	7,675	7,844	31,463	6,293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위원장, 2021.12.2. 의결)

-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함에 따라 연평균 5,007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2022.4.1. 시행)
  - ➢ 추계 대상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21.12.9)(중위 시나리오 가정) 출생아 수로 가정하고, 첫만남이용권 지급단가(200만원)를 적용하여 산출

표 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첫만남이용권 지원	5,503	4,663	4,683	4,963	5,223	25,035	5,007
- 국비	3,732	3,162	3,176	3,366	3,542	16,978	3,396
- 지방비	1,771	1,501	1,507	1,597	1,681	8,056	1,611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위원장, 2021.11.11. 의결)

- 농업과 수산업 분야와 같이 임업·산림분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함에 따라 연평균 1,456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2022.10.1. 시행)
  - ➢ 추계 대상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공익직접지불금, 육림업 직접지불금,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면적직접지불금 및 포상금 등임

표 1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512	521	521	521	521	2,597	519
공익직접지불금	468	468	468	468	468	2,340	468
육림업 직접지불금	81	81	81	81	81	406	81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60	60	60	60	60	301	60
면적직접지불금	327	327	327	327	327	1,633	327
기타[1)]	1	1	1	1	1	4	1
합 계	1,449	1,458	1,458	1,458	1,458	7,281	1,456

주: 1) 기타 재정수반요인에는 공익직불제도 명예감시원, 포상금 지급 등이 포함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위원장, 2021.11.11. 의결)

- 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정부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1조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연평균 9,500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2022.1.1. 시행)
  - ➢ 부칙 제3조[4)] 규정에 따라 2022년은 7,500억원으로 하고, 2023년부터 매년 1조원의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산

표 1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	7,500	10,000	10,000	10,000	10,000	47,500	9,500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부칙 제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회계연도의 정부출연금은 7천500억원으로 한다.

[부록] 2021년도 4분기 재정수반법률 주요 재정수반요인 및 추계 현황

(단위: 억원)

수입 지출	의안 번호	의안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2022~2026년 합계	2022~2026년 연평균
수입	2113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등)	-232,262	-46,452
	211361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가가치세 지방이양비율 상향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특례 등)	-223,850	-44,770
	21132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가가치세 지방이양비율 상향)	215,432	43,086
	21138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기한 3년 연장 등)	-94,224	-18,845
	21136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부금세액공제 공제율 1년간 5%p 한시상향 등)	-3,187	-637
	21136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	-2,121	-424
	211239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 간주 세부담률 판정기준 조정 등)	900	180
	21136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 등)	-739	-148
지출	211364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세 미만 영아수당 신설 및 만 7세 아동수당 지급)	103,419	20,684
	211323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 등)	47,500	9,500
	211363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	25,085	5,017
	211379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9,900	1,980
	211322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7,281	1,456
	21136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급식최저단가 결정 및 지원 등)	6,039	1,208
	21136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자산형성 지원 등)	5,208	1,042
	210972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팩토링 업무 지원)	2,981	596

주: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동을 초래하는 법률
2. 2022~2026년 동안 연평균 500억원 이상 재정변동 예상되는 법률만 제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1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이 정 훈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7)

2021년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2020년 대비 58.5조원(20.5%) 증가하였으며, 2차 추경예산(이하 추경예산) 대비 29.8조원(9.5%) 초과수납

● 경제여건의 빠른 회복세의 영향으로 소득 및 소비 관련 세수가 전년보다 개선된 흐름을 보인 가운데,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세수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세수입은 2년 연속 감소세에서 큰 폭의 증가로 전환

➤ 최근 5년 국세수입 증감률(전년대비, %)

('17) 9.4 ⇒ ('18) 10.6 ⇒ ('19) △0.04 ⇒ ('20) △2.7 ⇒ **('21) 20.5**

표 1 2021년 국세수입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20년 실적	'21년			'20년 실적 대비		'21년 추경예산 대비	
		본예산	2차 추경	실적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총국세	285.5	282.7	314.3	344.1	58.5	20.5	29.8	9.5
◦소득세	93.1	89.8	99.5	114.1	21.0	22.6	14.6	14.7
- 종합소득세	16.1	16.5	16.5	16.0	△0.1	△0.5	△0.5	△3.0
- 양도소득세	23.7	16.9	25.5	36.7	13.1	55.2	11.2	44.1
- 근로소득세	40.9	43.5	43.5	47.2	6.3	15.5	3.7	8.5
◦법인세	55.5	53.3	65.5	70.4	14.9	26.8	4.8	7.4
◦상속증여세	10.4	9.1	11.9	15.0	4.6	44.6	3.1	25.8
- 상속세	3.9	3.3	5.6	6.9	3.0	77.9	1.3	23.2
- 증여세	6.5	5.8	6.3	8.1	1.6	24.6	1.8	28.1
◦부가가치세	64.9	66.7	69.3	71.2	6.3	9.7	1.9	2.7
◦개별소비세	9.2	10.1	10.1	9.4	0.1	1.6	△0.7	△7.0
◦증권거래세	8.8	5.1	8.3	10.3	1.5	17.1	2.0	23.8
◦인지세	1.0	0.9	0.9	1.0	△0.0	△0.6	0.0	1.4
◦과년도수입	4.2	4.6	4.6	5.1	1.0	23.6	0.6	12.1
◦교통·에너지·환경세	13.9	15.7	15.7	16.6	2.7	19.1	0.9	5.8
◦관세	7.1	8.3	8.3	8.2	1.2	16.6	△0.1	△1.4
◦교육세	4.7	5.3	5.3	5.1	0.4	8.7	△0.2	△3.8
◦종합부동산세	3.6	5.1	5.1	6.1	2.5	70.3	1.0	19.9
◦주세	3.0	3.2	3.2	2.7	△0.3	△11.1	△0.6	△17.7
◦농어촌특별세	6.3	5.5	6.4	8.9	2.6	42.2	2.5	39.3

자료: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결과」, 2022.2.11.
NABOSTATS - 간략조회 - 조세통계 - 기초통계 - 국세수입실적(연간), www.nabostats.go.kr

주요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가 20%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관련 세수에서도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며 국세수입 증가를 견인

- 소득세는 114.1조원으로,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라 전년(93.1조원) 대비 21.0조원(22.6%) 증가
  - ➤ 양도소득세(36.7조원)는 부동산 가격상승 및 제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전년(23.7조원) 대비 13.1조원(55.2%) 증가
    - * 부동산가격 증감률(전년대비, %) 토지: ('19) 3.9 → ('20) 3.7 → ('21) 4.2
      주택: ('19) △0.4 → ('20) 5.4 → ('21) 9.9
    - * 제도적 요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1], 단기보유 주택 세율 상향[2],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상향[3]
  - ➤ 근로소득세(47.2조원)는 취업자 수 및 명목임금 상승 등 영향으로 전년(40.9조원) 대비 6.3조원(15.5%) 증가
    - * 취업자 수 증감(전년대비, 만명): ('19) 30.1 → ('20) △21.9 → ('21) 36.9
    - * 명목임금 상승률(%): ('19) 3.4 → ('20) 1.1 → ('21) 4.3[4]

그림 1 취업자 수 증감(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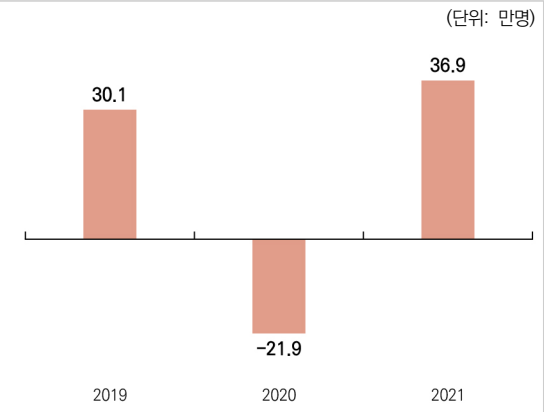

그림 2 명목임금 상승률(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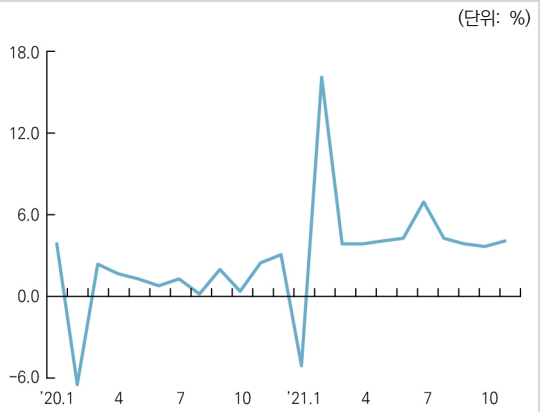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통계청, 「경제통계시스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법인세는 70.4조원으로, 대내외 경제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전년(55.5조원) 대비 14.9조원(26.8%) 증가
  - ➤ 수출액(통관)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19) △10.3 → ('20) △5.5 → ('21) 25.7
  -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연결) 세전순이익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18) △3.2 → ('19) △50.0 → ('20) 9.4 → ('21. 상반기) 161.4

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 추가
2) 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6~45% → 60%
3)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종전) 기본세율 + 10~20%p → (현행) 기본세율 + 20~30%p
4) 2021년은 1~11월 월평균 임금 기준

- 부가가치세는 71.2조원으로, 내수 경기 회복, 통관수입액 증가 및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라 전년(64.9조원) 대비 6.3조원(9.7%) 증가
  - ➢ 민간소비(명목)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20.4Q.) △5.6 → (21.1Q.) 2.6 → (2Q.) 6.4 → (3Q.) 5.8
  - ➢ 수입액(통관)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20.4Q.) △1.7 → (21.1Q.) 12.4 → (2Q.) 37.7 → (3Q.) 37.5
  - ➢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대비, %): ('19) 0.4 → ('20) 0.5 → ('21) 2.5

그림 3 민간소비 증감률(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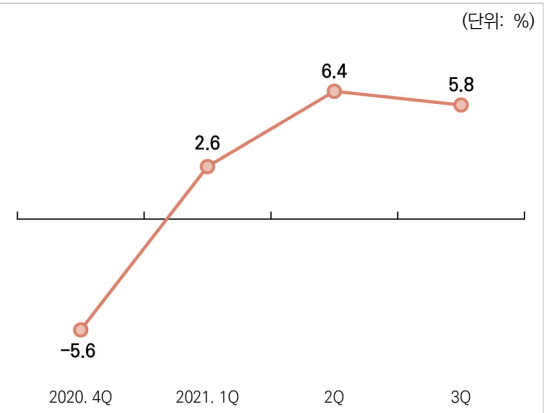

그림 4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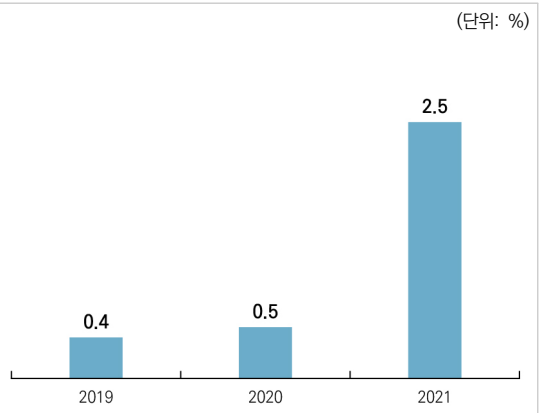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상속·증여세는 15.0조원으로, 우발세수 발생 및 증여거래 증가 등에 따라 전년(10.4조원) 대비 4.6조원(44.6%) 증가
  - ➢ 상속세(6.9조원)는 대기업 총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분납('21~'26)이라는 우발적 요인의 영향으로 전년(3.9조원) 대비 3.0조원(77.9%) 증가
  - ➢ 2021년 증여건수 증가율(전년대비, %)[5]: 토지 14.7, 주택 11.0
- 증권거래세는 10.3조원으로, 주식시장에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8.8조원) 대비 1.5조원(17.1%) 증가
  - ➢ 주식 거래대금(조원): 코스피 ('20) 3,026 → ('21) 3,825, 코스닥 ('20) 2,682 → ('21) 2,942
  - ➢ 연평균 주가지수(종가기준): 코스피 ('20) 2,220 → ('21) 3,111, 코스닥 ('20) 753 → ('21) 996

5) 증여세 신고·납부기한(3개월)을 고려하여 '20.10~'21.9월을 기준으로 산출

그림 5 코스피·코스닥 지수

그림 6 주식 거래대금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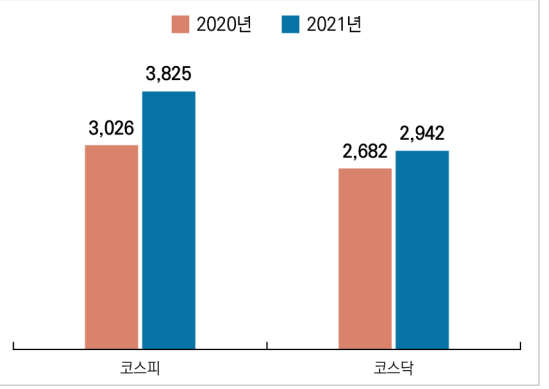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교통·에너지·환경세(16.6조원)는 2020년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교통량 회복 등에 따라 전년(13.9조원) 대비 2.7조원(19.1%) 증가
  - ➤ 수송부문 에너지소비량(전년대비, %)[6]: 휘발유 ('19) 4.2 → ('20) △1.9 → ('21) 4.9
    경유 ('19) 2.2 → ('20) △3.5 → ('21) 1.5
  - ➤ 다만, 정유사에 대한 유류세 납부유예로 2020년 세수 일부가 2021년으로 이월되며 증가세를 일부 제약
- 종합부동산세(6.1조원)는 공시가격 상승과 제도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전년(3.6조원) 대비 2.5조원(70.3%) 증가
  - ➤ 2021년도 공시가격 상승률(%): 토지 10.0, 주택 16.3, 공동주택 19.1
    * 공정시장가액비율: ('19) 85% → ('20) 90% → ('21) 95%
  - ➤ 제도적 요인: 주택분 세율 인상[7], 법인에 대한 주택분 기본공제(6억원) 배제, 세부담 상한비율 인상[8]
- 기타 세목의 경우에도 대부분 세목에서 대체로 전년대비 양호한 실적이 나타남
  - ➤ 관세(8.2조원)는 수입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7.1조원) 대비 1.2조원(16.6%) 증가
  - ➤ 농어촌특별세(8.9조원)는 증권거래세 등 관련세수 호조로 전년(6.3조원) 대비 2.6조원(42.2%) 증가

6) 2021년은 1~9월 전년동기대비 기준
7) 1~2주택(조정대상지역 1주택) 0.5~2.7% → 0.6~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0.6~3.2% → 1.2~6.0%
8)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 300%, 법인은 세부담상한제 미적용

2021년 국세수입은 빠른 경기회복 및 자산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추경예산(314.3조원)[9] 대비 29.8조원(9.5%)[10] 초과 수납[11]

- 유동성 확대에 따른 자산시장의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자산세수의 확대
  - ➢ 양도소득세: 추경예산(25.5조원) 대비 11.2조원(44.1%) 초과
  - ➢ 상속증여세: 추경예산(11.9조원) 대비 3.1조원(25.8%) 초과
  - ➢ 증권거래세: 추경예산(8.3조원) 대비 2.0조원(23.8%) 초과
- 국내외 경제의 빠른 회복세에 따른 법인실적 개선 및 내수경기 회복
  - ➢ 법인세: 추경예산(65.5조원) 대비 4.8조원(7.4%) 초과
  - ➢ 부가가치세: 추경예산(69.3조원) 대비 1.9조원(2.7%) 초과

그림 7 최근 5년간 국세수입 예산·실적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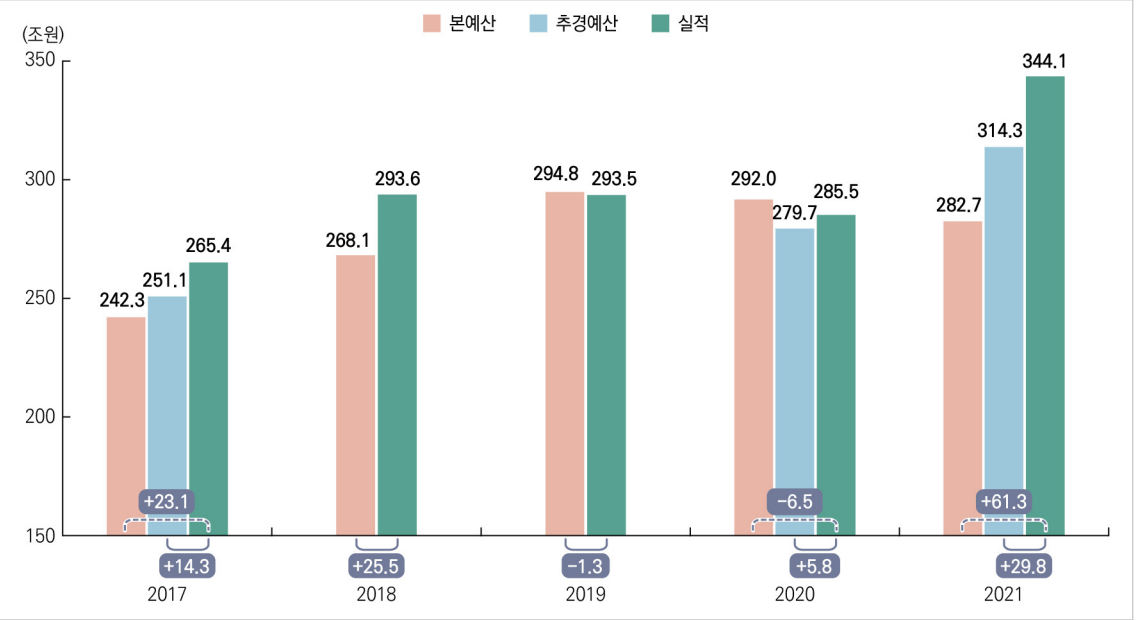

주: 2018년과 2019년은 국세수입 총액을 변동시키는 세입경정이 없음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9) (2021년 본예산) 282.7조원 → (2차 추경) 314.3조원
10) 본예산 대비 61.3조원(21.7%) 초과 수납
11) 정부예산 대비 초과세수 발생원인에 대한 상세내용은 동 보고서의 '국세수입 예·결산 차이 원인 분석'을 참고

재정추계&세제 분석

2022년 달라지는 복지분야 주요 사업 재정소요 추계
2022년 달라지는 조세제도
국세수입 예·결산 차이 원인 분석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의 인상률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

2022년 달라지는 복지분야 주요 사업 재정소요 추계

윤 주 철 · 이 윤 경 · 박 선 아 추계세제분석관 (02-6788-3729)

2021년 12월 3일 국회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복지분야(보건·복지·고용) 예산액은 총 217.7조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9.0% 증가하였으며, 2022년 달라지는 복지분야 주요 재정사업의 특징과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2년도 복지분야(보건·복지·고용) 재정사업은 소득·고용안전망 확충과 저출산 대응, 코로나19 백신 및 병상의 충분한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
  - ➤ 복지분야 예산액은 217.7조원으로, 이 중 고용·노동을 포함한 사회복지 부문 예산액이 195.0조원(89.6%)이고, 보건 부문 예산액은 22.7조원(10.4%)
  - ➤ 사회복지 부문 예산 중 공적연금(63.0조원)을 제외한 예산액은 2021년 본예산 대비 5.6% 증가한 131.9조원이며, 이 중 소득·고용안전망 확충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확대,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 출생아 및 영유아에 대한 수당 신규 추진 등이 있음
  - ➤ 보건 부문 예산 중 보건의료의 예산액은 2021년 본예산 대비 205.1% 증가한 10.1조원이며, 코로나19 대응 사업(2022년 예산 6.9조원)으로는 백신구매·접종, 병상확보 등 방역지원, 지역방역체계, 백신자주권 확보 등이 있음
  - ➤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141.8조원으로 복지분야 예산액의 65.1%를 차지하며, 2021년 본예산 133.3조원 대비 8.5조원(6.4%) 증가
- 2022년부터 복지분야 주요 재정사업의 변경사항은 대부분 제도의 구조적 변화보다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지원 대상의 확대 및 지원 단가의 인상 등의 변화로 인한 것임
  - ➤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육아휴직 급여액이 2022년 1월 1일부터 인상
  - ➤ 기초생활보장의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022년부터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생리용품 지원 대상이 저소득 여성청소년에서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
  - ➤ 여성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 연령이 확대되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인상
  - ➤ 영유아 양육을 위한 지원 확대로 영아수당[1] 및 첫만남이용권 사업이 신규 도입되어 2022년 예산 순증

표 1 2022년 달라지는 복지분야 주요 지출 예산 현황(국비 기준)

(단위: 억원)

부문	회계	사업명	2021 본예산(A)[1]	2022 본예산(B)	전년 대비 증감액(B-A)
고용	고용보험기금	구직급여[2]	113,486	115,339	1,853
		모성보호육아지원	15,915	19,333	3,418
		- 출산전후휴가 급여[3]	2,921	3,038	118
		- 육아휴직 급여	12,486	15,807	3,321
기초생활보장	일반회계	의료급여	76,805	81,232	4,428
아동·보육		아동수당	22,195	24,039	1,845
		영아수당[4]	-	3,731	3,731
		가정양육수당	7,608	5,082	△2,526
		첫만남이용권[4]	-	3,731	3,731
여성가족청소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72	126	54
보건	국민건강 증진기금	여성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	164	379	215
	일반회계, 국민건강 증진기금[5]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	3,014	-

주: 1) 본 표의 재정사업은 본예산과 추경 예산액이 동일함
2)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등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고려할 때 2023년 이후에 재정소요가 발생하므로 표의 구직급여 예산에는 플랫폼종사자의 구직급여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포함함
4) '영아수당' 및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2022년에 신규 도입됨
5)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의 2022년 예산은 본 사업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추계액을 표기한 것임. 2021년 예산액은 제시하지 않음. 건강보험은 국가 재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까지 지원)은 복지분야 의무지출로 분류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고용부문

가.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종사자에 대해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보험설계사 등 11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 플랫폼종사자도 실직, 출산 등의 사유로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급여 수급 가능

● (제도변화) 「고용보험법」 개정(2021.1.5.)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노무제공자[2]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

1)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영아수당 도입으로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이 감소하였으나, 가정양육수당의 근거 법령은 「영유아보육법」임
2) 노무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 노무제공자 중 11개 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3],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으며, 2개 직종(플랫폼종사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4]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 (급여지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플랫폼종사자는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5] 수급

- 실직한 플랫폼종사자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수급(다만, 수급요건을 고려할 때 수급자는 2023년 이후에 발생)
- 플랫폼종사자는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출산전후급여 수급

● (2022년 예산)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의 구직급여 사업과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서 지출

- 2022년도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전체 구직급여 예산은 11조 5,339억원, 모성보호육아지원은 1조 9,333억원(출산전후휴가 급여[6] 3,038억원)이며, 이 중 노무제공자 관련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는 각각 2,076억원[7]과 228억원

  ※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은 노무제공자에 대한 급여지출을 직종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 (5년 추계) 노무제공자 전체에 대한 급여지출은 2022년에 1,803억원 등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4,369억원으로 추계[8]

- 전체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 재정소요는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4,118억원, 출산전후급여는 250억원으로 추계(제도 시행 초기에는 재정소요가 작으나, 이후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등으로 재정소요는 점차 증가)[9]

  ※ 노무제공자에 대한 급여지출은 일반근로자의 급여 수급률 등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므로 실제 수급 정도 등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함(「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 노무제공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있는데 동 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종사자(14개 직종)를 말함.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임. 이 중 골프장 캐디와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방과후학교 강사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3) 교육교구 방문강사를 포함함. 교육교구 방문강사를 별도의 직종으로 볼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직종은 12개 직종임

4)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는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므로 "플랫폼종사자"로 통칭함

5)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함

6) 유산·사산휴가 급여(18억원)를 포함함

7)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고려할 때 2023년 이후에 수급자가 발생하므로 동 금액은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 예산임

8) 동 추계는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2021.10.)에 근거한 것임. 2022년 2월 현재 노무제공자 중 방과후학교 강사의 2021년 피보험자 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노무제공자의 보수 자료가 2021년 7~11월에 한정되어 있어 추계에 한계가 있음

9)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는 시행 초기이므로 직종별로 급여지출을 구분하기 어려워 전체 노무제공자에 대한 급여지출을 추계함

표 2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노무제공자) 총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구직급여	1,585	3,822	4,510	5,049	5,624	20,591	4,118
출산전후급여[1)]	218	234	251	267	283	1,252	250
합 계	1,803	4,056	4,761	5,316	5,907	21,843	4,369

주: 1) 유산·사산의 경우 금액이 미미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1.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11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와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2개 직종(플랫폼종사자)의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추계임
2. 노무제공자에 대한 급여지출은 일반근로자의 급여 수급률 등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므로 실제 수급 정도 등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육아휴직 제도 개편

육아휴직 급여액이 2022년 1월 1일부터 인상되고,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추가 인상

- (제도변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21.12.31.)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이 인상되고,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추가 인상
  - ➤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다른데, 이번 제도 개편으로 육아휴직 4~12개월의 기간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대체율이 기존 50%에서 80%로 상향되고, 월 상한액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10)]
  -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두 번째 휴직자의 1~3개월 기간에 대해 100%의 소득대체율(월 상한 250만원)을 적용하였으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번째 휴직자에 대해서도 1~3개월의 기간에 대해 100%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하고 부모 모두의 월 상한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3+3 부모육아휴직제")[11)]

표 3 2022년 육아휴직 급여액 인상

	구 분	기 존	개 편
육아휴직 급여 인상	1~3개월	통상임금의 80%(70~150만원)	통상임금의 80%(70~1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의 50%(70~120만원)	
부모 모두 육아휴직 ("3+3 부모육아휴직제")	1~3개월	(첫 번째) 통상임금의 80%(70~150만원) (두 번째) 통상임금의 100%(70~250만원)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최대 300만원)[1)]
	4~12개월	통상임금의 50%(70~120만원)	통상임금의 80%(70~150만원)

주: 1)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월 상한액은 높아짐(200~30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0) 한부모근로자의 경우 소득대체율 상향 및 월 상한액 인상은 육아휴직 7~12개월의 기간에 대해 적용함. 한부모근로자의 소득대체율은 1~3개월은 100%(70~200만원), 4~6개월은 80%(70~150만원), 7~12개월은 50%(70~120만원)이었음

11) 「고용보험법 시행령」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제95조의3)로 규정하고 있음

- (2022년 예산) 2022년도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비는 1조 9,333억원으로 이 중 육아휴직 급여는 1조 5,807억원
  - ➤ 2022년 육아휴직 급여는 2021년 본예산 대비 3,321억원(26.6%) 증가
- (5년 추계) 육아휴직 제도 개편을 반영한 향후 5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 재정소요는 연평균 1조 6,822억원으로 추계
  - ➤ 육아휴직 제도 개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연평균 2,834억원 예상

표 4 육아휴직 급여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총재정소요	14,859	16,021	16,919	17,737	18,575	84,110	16,822
추가재정소요	2,591	2,677	2,826	2,966	3,108	14,168	2,834

주: 한부모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는 전체 육아휴직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소득대체율 상향 등의 효과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기초생활보장부문: 의료급여[1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제도변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계획[13]에 따라 수급권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노인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신규 수급자 10.9만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의료급여 지원
- (2022년 예산) 제도 개편으로 인하여 10.9만명이 수급자로 신규 추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급여 사업의 2022년도 예산은 8조 1,232억원으로, 2021년도 예산 7조 6,805억원 대비 4,428억원(이상 국비 기준) 증액
  - ➤ 2년 동안 순차적으로 신규 수급자가 편입되어 2022년에 6.8만명, 2023년에 4.1만명이 의료급여를 추가 수급할 것으로 예상

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빈곤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그 중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임
13)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는 보건복지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7.8.)에 근거한 것으로, 빈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을 설정하여, 2019년에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및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함

- (5년 추계) 총재정소요는 2022년 10조 7,308억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6년 13조 69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의료급여 추가 지급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4,473억원에서 2026년 8,563억원으로, 향후 5년간 총 3조 6,537억원(연평균 7,3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5 의료급여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총재정소요	107,308	114,668	119,763	125,102	130,691	597,532	119,506
- 국비	81,232	86,916	90,773	94,815	99,045	452,781	90,556
- 지방비	26,076	27,752	28,990	30,288	31,646	144,751	28,950
추가재정소요	4,473	7,485	7,828	8,187	8,563	36,537	7,307
- 국비	3,386	5,666	5,926	6,198	6,482	27,658	5,532
- 지방비	1,087	1,819	1,902	1,989	2,081	8,878	1,776

주: 1. 총재정소요와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기준 제도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 추계 결과
2. 지방비는 2022년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75.7%)을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여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아동·보육부문

- 2022년부터 영유아 및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사업이 강화됨에 따라 지원대상 연령별로 지원 내용이 변화

표 6 2022년 변화되는 아동·보육부문 재정사업 비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기존</th><th colspan="4">현행(2022년~)</th></tr>
<tr><th>아동수당[1)]</th><th>가정양육수당[2)]</th><th>아동수당[1)]</th><th>가정양육수당[2)]</th><th>영아수당(신규)[3)]</th><th>첫만남이용권(신규)[3)]</th></tr>
<tr><td>0~11개월
(1세 미만)</td><td rowspan="3">월 10만원</td><td>월 20만원</td><td rowspan="4">월 10만원</td><td>-</td><td rowspan="2">월 30만원</td><td>출생 시 200만원</td></tr>
<tr><td>12~23개월
(1세 이상~2세 미만)</td><td>월 15만원</td><td>-</td><td>-</td></tr>
<tr><td>24~85개월
(2세 이상~취학 전)</td><td rowspan="2">월 10만원</td><td rowspan="2">월 10만원</td><td>-</td><td>-</td></tr>
<tr><td>86~95개월
(취학 후~8세 미만)</td><td>-</td><td>-</td><td>-</td></tr>
</table>

주: 1)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은 7세 미만(0~83개월)이었으나 2022년부터 8세 미만(0~95개월) 아동으로 확대
2) 가정양육수당의 지급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이하 "어린이집 등")를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아동이었으나,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 지급
3)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에 신규 도입된 재정사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가. 아동수당[14] 지원 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7세 미만 아동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 (제도변화) 「아동수당법」 개정(2021.12.)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7세 미만(0~83개월)에서 8세 미만(0~95개월)으로 확대
  - ➤ 2022년 4월부터 0~7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되, 4월 지급 시 1~3월분도 소급 지급
  - ➤ 지급단가는 월 10만원으로 동일
- (2022년 예산) 아동수당 수급자 수의 증가로 인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수당 지급 사업의 2022년도 예산은 2조 4,039억원으로, 2021년도 예산 2조 2,195억원 대비 1,845억원(이상 국비 기준) 증액
  - ➤ 지급 연령이 1세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자 수가 2021년 2,487,169명에서 2022년 2,734,707명으로 증가하나, 아동수당 수급 전체 아동 수는 2026년 2,075,841명으로 감소
- (5년 추계) 아동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아동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총재정소요는 2022년 3조 2,662억원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6년 2조 4,8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며, 아동수당 지급 연령 1세 확대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5,239억원에서 2026년 3,776억원으로, 향후 5년간 총 2조 2,800억원(연평균 4,5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7 아동수당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총재정소요	32,662	30,235	27,823	26,003	24,810	141,534	28,307
- 국비	24,039	22,253	20,477	19,138	18,260	104,169	20,834
- 지방비	8,623	7,982	7,345	6,865	6,550	37,365	7,473
추가재정소요	5,239	5,100	4,573	4,112	3,776	22,800	4,560
- 국비	3,856	3,753	3,366	3,027	2,779	16,781	3,356
- 지방비	1,383	1,346	1,207	1,086	997	6,019	1,204

주: 1. 총재정소요와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기준 제도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 추계 결과
2. 지방비는 2022년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73.6%)을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여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4)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급여액(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나. 영아수당 지원(신규 도입)

어린이집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2세 미만 아동(기존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에게 매월 영아수당 지급

- (제도변화) 「아동수당법」 개정(2021.12.)에 따라 어린이집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세 미만 아동(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은 기존 "가족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지급
  - ➢ 기존 가족양육수당의 월 지원단가는 0세 20만원, 1세 15만원으로, 영아수당 지원으로 인하여 2세 미만 아동(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한 가족양육수당 지원은 순감
  - ➢ 영아수당 지원단가는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2년 월 30만원, 2023년 월 35만원, 2024년 월 40만원, 2025년부터 월 50만원을 지급
- (2022년 예산) 2022년부터 신규 도입하여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영아수당 지원 사업의 2022년도 예산은 3,731억원으로, 2021년도 예산 대비 3,731억원(이상 국비 기준) 순증
- (5년 추계) 지원단가의 단계적 인상으로 인하여 영아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총재정소요는 2022년 5,452억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6년 2조 1,69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며, 향후 5년간 총 8조 620억원(연평균 1조 6,1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8 영아수당 총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총재정소요	5,452	15,657	16,938	20,878	21,695	80,620	16,124
- 국비	3,731	10,715	11,592	14,289	14,848	55,176	11,035
- 지방비	1,721	4,941	5,346	6,589	6,847	25,444	5,089

주: 1. 총재정소요는 2022년 기준 제도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 추계 결과
2. 지방비는 2022년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68.44%)을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여 추계
3. 영아수당 지원단가의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2022년 월 30만원, 2023년 월 35만원, 2024년 월 40만원, 2025년부터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가정양육수당[15] 지원 대상 감소

2세 미만 대상의 영아수당 지원사업을 분리하여 실시함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2세~6세로 감소

- (제도변화) 「아동수당법」 개정(2021.12.)에 따른 영아수당 지원사업의 도입으로 인하여 2022년 이후 출생아는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2세 이전까지는 영아수당, 2세부터 86개월까지는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 지급 대상
- (2022년 예산)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2022년생 제외로 지원아동 수가 감소하면서 보건복지부 소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의 2022년도 예산은 5,082억원으로, 2021년도 예산 7,608억원 대비 2,526억원(이상 국비 기준) 감액
  - ➤ 출생아 감소 및 2022년생 제외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수가 2021년 560,768명에서 2022년 410,377명으로 감소하며, 2026년에는 119,931명으로 급감
- (5년 추계) 지원아동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가정양육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총재정소요는 2022년 7,425억원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6년 1,43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표 9 가정양육수당 총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총재정소요	7,425	1,778	1,643	1,532	1,439	12,804	2,561
- 국비	5,082	1,217	1,125	1,049	985	8,763	1,753
- 지방비	2,343	561	519	484	454	4,041	808

주: 1. 총재정소요는 2022년 기준 제도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 추계 결과
2. 지방비는 2022년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68.44%)을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여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첫만남이용권 지원(신규 도입)

2022년 1월 1일 이후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일시 지급

- (제도변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2021.12.)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바우처[16]를 일회성으로 지급

15) 가정양육수당은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시설이용-가정양육 간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아동(최대 86개월)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16) 아동의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로 지급하며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2022년 예산) 2022년부터 신규 도입하여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2022년도 예산은 3,731억원으로, 2021년도 예산 대비 3,731억원(이상 국비 기준) 순증
- (5년 추계)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소요되는 총재정소요는 2022년 5,503억원에서 2026년 5,223억원으로 증가하며, 향후 5년간 총 2조 5,035억원(연평균 5,0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표 10 첫만남이용권 총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총재정소요	5,503	4,663	4,683	4,963	5,223	25,035	5,007
- 국비	3,732	3,162	3,176	3,366	3,542	16,978	3,396
- 지방비	1,771	1,501	1,507	1,597	1,681	8,056	1,611

주: 1. 총재정소요는 2022년 기준 제도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 추계 결과
2. 지방비는 2022년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67.8%)을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여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여성·가족·청소년부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17] 대상 확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기존 저소득 여성청소년(11~18세)에서 모든 여성청소년(9~24세)으로 확대

- (제도변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2021.4.)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기존 저소득 여성청소년[18]에서 모든 여성청소년[19]으로 확대
  - ➢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9~10세 및 19~24세의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추가 지급하고 2024년부터는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급
- (2022년 예산) 지원 대상 수의 증가로 인하여 여성가족부 소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2022년도 예산은 126억원으로, 2021년도 예산 72억원 대비 54억원(이상 국비 기준) 증액
- (5년 추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소요되는 총재정소요는 2022년 263억원에서 증가하여 2026년 5,26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확대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117억원에서 2026년 5,044억원으로, 향후 5년간 총 1조 5,257억원(3,05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17)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저소득 여성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연간 지원액(2022년 기준 144,000원)을 바우처로 지급
18)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교육·주거 급여) 수급,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11~18세 여성청소년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표 1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총재정소요	263	312	5,173	5,227	5,263	16,239	3,248
- 국비	126	150	2,483	2,509	2,526	7,795	1,559
- 지방비	137	162	2,690	2,718	2,737	8,444	1,689
추가재정소요	117	115	4,968	5,014	5,044	15,257	3,051
- 국비	56	55	2,385	2,407	2,421	7,324	1,465
- 지방비	61	60	2,583	2,607	2,623	7,934	1,587

주: 1. 총재정소요와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기준 제도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 추계 결과
2. 지방비는 2022년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48%)을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여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보건부문

가. 여성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20] 대상 연령 확대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 여성청소년에게 필수예방접종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 대상 연령을 확대

- (제도변화) 2022년 3월부터 13~17세 여성 및 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종전 12세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 2022년부터 접종 대상연령 확대
- (2022년 재정소요) 제도 개편에 따라 과거 미접종자와 저소득층 여성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할 경우 2022년 예산은 379억원으로, 2021년 대비 215억원(국비 기준) 증액
  - ➤ 13~17세 중 백신 접종률[21]에 따라 기존 사업에서 미접종한 인원과 18~26세 저소득여성을 포함하여 2022년에는 접종 대상자가 43만명 증가
- (5년 추계) 총재정소요는 2022년 379억원, 2026년에는 136억원으로 2022~2026년 5년간 총 911억원(연평균 182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215억원, 2026년에는 16억원으로 5년간 총 305억원(연평균 61억원) 소요 예상
  - ➤ 2022년에는 미접종자와 저소득여성 전체가 접종 대상이 되어 재정소요가 증가하나, 2023년부터는 2022년 사업에서 미접종한 인원이 접종 대상이 되므로 재정소요가 감소함

20) 해당 사업은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의 내내역사업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의 일부
2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의 2020년 1차 접종률은 89.6%, 2019년은 89% 수준임

표 12 여성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사업 재정소요: 2022~2026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총재정소요	379	161	142	141	136	911	182
추가재정소요	215	36	18	16	16	305	61

주: 총(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기준 제도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 추계 결과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인상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을 40만원 인상하여 지급

- (제도변화)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을 인상
  - ➢ 단태아의 경우 종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태아의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상향하고, 의료(분만)취약지[22]의 산모에게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
- (2022년 재정소요) 건강보험 재정은 국가재정에 포함되지 않아 공식 발표된 예산액은 없으나, 추계 결과 총재정소요는 3,014억원 수준 예상
  -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21.12.9)의 출생아 수 추계를 이용하여 임산부 수를 전망하고 임산부 수 대비 지원사업 신청 건수 비중[23]과 지원금액을 적용하여 산출
  - ➢ 건강보험 재정은 양출제입 방식으로, 본 제도 변화에 따른 지출 확대분만큼 보험료율 인상 등을 통해 수입액 증가가 수반되고[24] 법률에서 정한 비율만큼 국고(일반회계+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25]
- (5년 추계) 총재정소요는 2022년 3,014억원에서 점점 증가하여 2026년에는 3,481억원으로 2022~2026년간 총 1조 6,107억원(연평균 3,2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1,188억원, 2026년 1,376억원으로 5년간 총 6,354억원(연평균 1,271억원) 소요 예상
  - ➢ 출생아 수 추계는 2023년부터 증가하여 이에 따른 임산부 수는 2022년부터 확대되면서 총(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됨

22) 의료(분만)취약지는 60분 내 분만의료 이용률(60분 내 이동가능한 의료기관을 이용한 분만건수/관내 총 분만의료 이용건수)이 30% 미만이고, 60분 내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을 지정하며, 인천 옹진군 등 총 32개 지역
23)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임신 및 출산이 확인된 자로서 유산 및 사산을 포함하므로 지원금액 신청 건수는 해당 연도 임산부 수 추정치를 상회함.
24) 건강보험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까지 일반회계(14%까지) 및 국민건강증진기금(6% 까지)에서 국가가 지원 하며 해당 국고지원액은 복지분야 의무지출로 분류됨
25)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료 수입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각각 14%, 6%까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추계는 국고(일반회계+기금)의 2020년 실제 지원 비율인 14.77%를 적용

표 13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재정소요: 2022~2026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총재정소요	3,014	3,027	3,208	3,376	3,481	16,107	3,221
추가재정소요	1,188	1,193	1,265	1,331	1,376	6,354	1,271

주: 1) 총(추가)재정소요 추계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만을 추계
2) 2022년 총재정소요와 추가재정소요는 건강보험 재정의 예상 지출을 추계한 수치임
3) 총(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기준 제도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 추계 결과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향후 과제

2022년 복지분야에서 제도가 변경되는 주요 재정사업은 복지분야 지출의 증가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 재정운용 대책의 마련 필요

- 2022년에 달라지는 복지분야 주요 재정사업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최근 우리나라가 대면하고 있는 저출산 및 신 양극화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출 확대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임
- 다만,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와 이혼 및 한부모 가족, 1인 가구 증가 등의 사회적 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복지분야 의무 및 재량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장기 복지분야 지출 추이를 고려한 보다 면밀한 재정운용 필요
  - ➤ 참고로, 우리나라의 OECD 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990년 GDP 대비 2.6%에서 2019년 12.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OECD 평균인 20.0%보다 낮은 수준
-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의 경우 불가역적이라는 지출성격으로 인해 통상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므로, 관련 법률 입안 시 미래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대한 면밀한 고려 필요
  - ➤ 전술한 10개 주요 복지분야 재정사업 중 가정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 여성 생리용품 지원과 여성·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 사업을 제외한 6개 사업이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
  - ➤ 최근 5년간(2017~2021년, 본예산 기준)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0.8%로, 총지출(8.6%)이나 재량지출(9.4%) 증가율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표 14 2022년 달라지는 복지분야 주요 지출 사업별 내용

부문	사업명	제도개요	2022년 제도 변화	입법 현황
고용	구직급여	• 실직 등 수급요건 충족 시 120~270일 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	•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 지급 ※ 보험설계사 등 11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 「고용보험법」 개정(2021.1.5.)
	모성보호 육아지원	• 출산, 육아휴직 등 수급요건 충족 시 일정 기간 동안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지급	• (출산전후급여)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수급요건 충족 시 출산전후급여 지급 ※ 보험설계사 등 11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 (육아휴직 급여) 2022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액 인상 및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고용보험법」 개정(2021.1.5.)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21.12.31.)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및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내용: 의료급여 지원	• 지원대상 확대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2017.8.)
아동·보육	아동수당	• 지원대상: 7세 미만(0~6세) 아동 • 월 급여액: 10만원	• 지원대상 확대 -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	• 「아동수당법」 개정(2021.12.14.)
	영아수당	• 지원대상: 어린이집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2세 미만(0~1세) 아동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월 급여액: 30~50만원	• 제도 신설 - 어린이집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2세 미만(0~1세) 아동에게 매월 영아수당을 지원(단계적 인상: 2022년 30만원,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부터 50만원)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5대 핵심과제로 발표(2020.12.15.) • 「아동수당법」 개정(2021.12.14.)
	가정양육 수당	•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전 아동(최대 86개월) • 월 급여액: 10~20만원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이상 10만원)	• 지원대상 축소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생이 지원대상에서 제외	• 「아동수당법」 개정(2021.12.14.) • 사업의 근거 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첫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모든 출생아 • 지원내용: 200만원의 바우처 일시금 지급	• 제도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5대 핵심과제로 발표(2020.12.15.)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2021.12.14.)
여성가족청소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지원대상: 11~18세 저소득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생리용품 지원	• 지원대상 확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2021.4.20.)
보건	여성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	• 지원대상: 12세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 지원대상 확대 - 13~17세 여성과 18~26세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여성으로 확대	• 「2022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질병관리청 지침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임신·출산한 가입자·피부양자 및 2세 미만의 가입자·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 • 지원내용: 진료비 이용권 지급(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의료취약지 20만원 추가)	• 진료비 지원금액 상향 - 단태아 60만원→100만원 - 다태아 100만원→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21.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달라지는 조세제도

태 정 림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52)

1. 개관

정부제출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2021년 12월 2일과 9일, 2022년 1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 2022년 이후부터 시행될 개정세법이 확정됨

- 국세의 경우 국회의원 발의 및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240건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17개 법안(대안 11건, 수정안 4건, 원안 2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었고 각각 12월 2일과 9일에 걸쳐 의결

2021년 세법개정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포용적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경제·사회적 구조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 주류를 이룸

- 세부적으로는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세제지원, 납세자 편익제고 등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정비 등으로 구성
- 2021년 세법개정 방향 및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 2021년 세법개정 방향 및 주요 개정내용

주요 개정방향	주요 개정내용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소득금액기준 상향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상향 및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구조 전환 지원	•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배터리, 백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 •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납세자 편익제고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조성	• 10년 이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 • 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물납허용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1.10.26. 및 「2021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2021.12.24. 토대로 재정리

2. 2022년 달라지는 조세제도

가. 소득세 분야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제공

● (주요 내용)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이 되는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소득상한금액)을 종전 대비 200만원씩 인상하고, 근로소득자의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를 다음해 9월에서 다음해 6월로 3개월 단축

표 2 근로장려금의 총소득기준금액 개정내용

가구 유형	개정 전	개정 후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 (취지 및 효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정산 시기 단축을 통한 반기 근로장려금 조기지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을 지원

➢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혜가구가 2020년 대비 약 55만 가구(12.8%) 증가하고, 2022~2026년 동안 약 1.3조원(연평균 2,627억원)의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1)]

➢ 국회 심사과정에서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금액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고, 최근 지속적인 제도확대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가 우려되므로 당초 제도의 취지내에서 충실한 운영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이 채택

1세대 1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을 통한 세부담 완화

● (주요 내용) 1세대 1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법률로 상향입법

➢ 1세대 1주택, 1세대 1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 기준금액을 종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2)]

➢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비과세 기준금액을 법률로 상향하여 입법

● (취지 및 효과) 2008년 9억원으로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된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상향조정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

➢ 국회 심사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을 반대하는 의견도 제기되었으나, 2008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한 기준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12억원으로 상향 조정

1)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1.10.26. pp.47~49.
2)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주요 내용) 난임시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확대
  - ➤ 난임시술비 및 난임시술 관련 의약품비의 공제율을 종전 20%에서 30%로 상향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상향
- (취지 및 효과) 출산율 제고 및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 ➤ 국회예산정책처는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함에 따라 2023~2026년 동안 62억원(연평균 17억원)의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3]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를 위해 가상자산소득 과세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

- (주요 내용)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시행 시기를 당초 2022년 1월 1일에서 1년 유예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취지 및 효과) 과세시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과세시행 시기가 유예되었으며, 유예기간 동안 가상자산 거래정보 전송시스템, 법·제도적 과세인프라 구축, 납세자 대상 교육·홍보 등 과세체계의 정비·보완이 뒷받침될 필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상향 및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 (주요 내용)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율을 2021년 기부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
  - ➤ 현행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이나 2021년에 기부한 금액에 한하여 각각 5%p씩 한시적으로 상향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4]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5]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에 대하여 기부금 10만원 이하시 90.9%(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시 15%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
- (취지 및 효과) 기부문화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국회예산정책처는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에 따라 2022년 3,223억원의 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6]
  -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 기반한 제도로서, 당초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부문화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착될 필요

---

3) 그 외 난임시술 관련 의약품비 및 고위험임산부 등에 대한 의료비 공제율 상향의 경우 의약품 구매액 및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소득자 등에 대한 자료의 부재로 세수효과 추정이 곤란.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2021.12.24. p.53.
4) 2021년 10월 19일 제정, 2023년 1월 1일 시행. 개인별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은 500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 기부금을 모금하고 기부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5) 국회 심사과정에서 1인당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시행시기를 의원안의 '공포 후 6개월'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로 조정
6)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2021.12.24. p.51.

나. 법인세 분야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주요 내용) 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백신 분야 첨단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동 분야에 대한 R&D 비용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표 3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내용

<table>
<tr><th></th><th>개정 전</th><th>개정 후</th></tr>
<tr><td>대상기술</td><td>신설</td><td>국가전략기술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첨단기술)</td></tr>
<tr><td>세액
공제율</td><td>(R&D)
(단위: %)
<table>
<tr><th></th><th>중소</th><th>중견</th><th>대</th></tr>
<tr><td>일반</td><td>25</td><td>8</td><td>2</td></tr>
<tr><td>신성장·원천</td><td>30~40</td><td colspan="2">20~30</td></tr>
</table>
(시설투자)
(단위: %)
<table>
<tr><th rowspan="2"></th><th colspan="3">당기분</th><th rowspan="2">증가분</th></tr>
<tr><th>중소</th><th>중견</th><th>대</th></tr>
<tr><td>일반</td><td>10</td><td>3</td><td>1</td><td rowspan="2">3</td></tr>
<tr><td>신성장·원천</td><td>12</td><td>5</td><td>3</td></tr>
</table></td><td>(R&D)
(단위: %)
<table>
<tr><th></th><th>중소</th><th>중견</th><th>대</th></tr>
<tr><td>일반</td><td>25</td><td>8</td><td>2</td></tr>
<tr><td>신성장·원천</td><td>30~40</td><td colspan="2">20~30</td></tr>
<tr><td>국가전략기술</td><td>40~50</td><td colspan="2">30~40</td></tr>
</table>
(시설투자)
(단위: %)
<table>
<tr><th rowspan="2"></th><th colspan="3">당기분</th><th rowspan="2">증가분</th></tr>
<tr><th>중소</th><th>중견</th><th>대</th></tr>
<tr><td>일반</td><td>10</td><td>3</td><td>1</td><td rowspan="2">3</td></tr>
<tr><td>신성장·원천</td><td>12</td><td>5</td><td>3</td></tr>
<tr><td>국가전략기술</td><td>16</td><td>8</td><td>6</td><td>4</td></tr>
</table></td></tr>
<tr><td>적용기한</td><td>신설</td><td>2021.7.1.~2024.12.31.</td></tr>
</table>

- (취지 및 효과)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업투자 장려
  - ➢ 동 제도는 기존의 일반, 신성장·원천기술의 2단계 세액공제 구조에서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추가 신설하여 세액공제율을 우대 적용하는 것으로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2022~2026년 약 4.4조원(연평균 1.1조원)의 법인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7)]
  - ➢ 한편,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수소, AI 등 타 분야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국가전략기술에 다양한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채택

7)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2021.12.24. p.64.

첨단기술 분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주요 내용)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취지 및 효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첨단기술 분야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
  - ➢ 국회 심의 과정에서 탄소중립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탄소중립 기술과 신산업 기술을 추가[8)]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금액 한시적 상향

- (주요 내용)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비수도권의 취업 취약계층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
  - ➢ 비수도권의 우대공제 대상(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1인당 공제금액을 종전 1,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2021~2022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 (취지 및 효과)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 및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상 인센티브 제공
  - ➢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개정에 따라 2022~2027년 동안 5.3조원(연평균 1.1조원)의 법인세 및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9)]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주요 내용)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생계형 창업기업 기준금액을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하여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
- (취지 및 효과)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및 생계형 창업 지원
  - ➢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개정에 따라 2022~2026년 동안 1.8조원(연평균 4,559억원)의 법인세 및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1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 (주요 내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가산세(필요경비 산입액의 1%)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사실과 다르게 기입한 금액의 1%) 신설
- (취지 및 효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 유도

---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22년 1월 28일 시행)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은 종전 12대 분야 235개 기술에서 탄소중립 기술 등이 추가되어 13대 분야 260개 기술로 확대됨
9)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2021.12.24. p.66.
10)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2021.12.24. p.69.

다. 소비세 분야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주요 내용) 신용카드 등의 매출세액공제에 대한 한시적 우대 공제율 및 우대 공제한도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 ➢ 소매·숙박업 등 일반 소비자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해 우대공제율(1.0%→1.3%) 및 우대 공제한도(500만원→1,000만원)를 적용
- (취지 및 효과) 한시적 우대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 사업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지속
  - ➢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개정에 따른 우대공제율 적용시 1인당 평균 추가 공제액은 음식업 39만원, 소매업 29만원, 서비스업 16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2022~2023년 동안 8,825억원(연평균 4,413억원)의 부가가치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11)]

기후위기대응기금 등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3년 연장

- (주요 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 ➢ 개정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도입된 1994년 이후 7번째 적용기한 연장에 해당
- (취지 및 효과) 교통시설 확충사업, 에너지·자원사업 및 환경보전·개선사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 등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

중앙정부 기능이양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인상

- (주요 내용)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2022년 23.7%, 2023년 이후 25.3%로 단계적 상향

표 4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추이

2010~2013	2014~2018	2019	2020~2021	2022	2023~
5%	11%	15%	21%	23.7%	25.3%

- (취지 및 효과) 제2단계 재정분권 추진(2021.7.28.) 방안을 뒷받침
  - ➢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개정에 따라 2022~2026년 동안 21.1조원(연평균 4.2조원)의 부가가치세수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12)]

11)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1.10.26. p.113. 및 「2021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2021.12.24. p.82.

라. 재산세 분야

주거목적 주택 보유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상향

- (주요 내용)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2억원 상향
  - ➤ 기본공제액 상향시 과세표준은 '[주택분 합산공시가격 – 11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함에 따라 종전 9억원 대비 과세표준이 감소하는 효과 발생
- (취지 및 효과) 장기간 고정된 기본공제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거목적 주택 보유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
  - ➤ 국회 심의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뿐 아니라 일반 납세자의 기본공제액도 2008년 이후 6억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공제액 상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투기수요 억제라는 정부 방침과의 일관성 측면에서 1세대 1주택자에 한정하여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합의
  - ➤ 국회예산정책처는 기본공제액 상향에 따라 2021~2025년 동안 4,180억원(연평균 836억원)의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13)]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 (주요 내용)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중견기업 요건 완화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기준을 종전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상향
  - ➤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를 종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5억원 상향
- (취지 및 효과) 중견기업 및 영농 종사자의 안정적 세대교체를 위한 지원 강화

피상속인을 동거부양한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으로 확대

- (주요 내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종전 직계비속에서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한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
  -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를 종전 직계비속에서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 배우자까지 확대[14)]
  - ➤ 적용시기: 2022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 (취지 및 효과) 부모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 확대

---

12)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2021.12.24. p.81.
13) 동 개정 사항은 2021년 정기국회 이전에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으로 의결(2021.8.31.)됨에 따라 2021년 과세분부터 적용됨.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2021.12.24. p.96.
14) 2021년 12월 8일 개정세법 시행 후 상속세 신고 및 결정분부터 적용

문화재·미술품의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고, 상속세의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

- (주요 내용)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에 대하여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고, 상속세를 장기간에 나누어 납부하는 연부연납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 문화재 등 상속세 물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 ➢ 상속세 연부연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 (취지 및 효과) 상속세 물납대상 확대 및 연부연납 대상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납세자 편익을 제고하고,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우수한 문화유산을 공공자산화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

3. 향후 과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2~2026년 동안 26.9조원[15]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세수감소는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에 따른 세수효과(-21.1조원) 외에 국가전략기술 R&D 비용 및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4.4조원), 근로장려금(EITC) 소득기준금액 상향(-1.3조원) 등에 주로 기인
  - ➢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에 따른 세수효과를 제외할 경우 2021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2~2026년 동안 5.8조원(연평균 1.2조원) 수준
- 그 외 기타 세목에서는 특정외국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담 판정 비율 상향 등에 따라 4,441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향후 글로벌 금융·통화정책의 긴축전환 등 대내외 충격이 자산가격 조정 등으로 연계될 경우 세입 증가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확실성에 대비한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을 지속할 필요

-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및 양극화 대응 등을 위한 재정소요 또한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안정적 재정수입 확충이라는 조세 본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측면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각종 조세지출 제도의 적극적인 정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세입기반 확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15) 세수효과는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변화를 추계) 기준이며,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에 따른 세수효과(2022~2026년 동안 21.1조원)가 포함된 것임. 다만, 일몰 연장 법안의 경우 세수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가결법률안 재정소요점검과는 일부 차이가 존재함

국세수입 예·결산 차이 원인 분석[1)]

박 정 환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5)

2021년 국세수입은 344.1조원 수준으로, 추경예산을 29.8조원(9.5%) 초과하는 수납실적 기록
이하에서는 2021년 국세수입 실적이 예산을 초과한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함

1. 2021년 국세수입 실적 현황

2021년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추경예산 314.3조원을 29.8조원(9.5%) 상회한 가운데, 주요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기타세무에서도 초과세수 발생

- 소득세는 114.1조원으로, 자산시장 호조 및 고용시장 지표 개선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추경예산 99.5조원을 14.6조원(14.7%) 상회
- 법인세는 70.4조원으로, '20년 하반기부터 대외경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추경예산 65.5조원을 4.8조원(7.4%) 상회
- 부가가치세는 71.2조원으로, 민간소비 회복,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라 추경예산 69.3조원을 1.9조원(2.7%) 상회
- 이 밖에도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과세에서 주로 추경예산 대비 높은 실적이 발생

표 1 2021년 국세수입 실적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0 실적	2021					
		추경예산	실적	'20년 실적 대비		'21년 추경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국세	285.5	314.3	344.1	58.5	20.5	29.8	9.5
소득세	93.1	99.5	114.1	21.0	22.6	14.6	14.7
- 종합소득세	16.1	16.5	16.0	△0.1	△0.5	△0.5	△3.0
- 양도소득세	23.7	25.5	36.7	13.1	55.2	11.2	44.1
- 근로소득세	40.9	43.5	47.2	6.3	15.5	3.7	8.5
법인세	55.5	65.5	70.4	14.9	26.8	4.8	7.4
부가가치세	64.9	69.3	71.2	6.3	9.7	1.9	2.7
상속·증여세	10.4	11.9	15.0	4.6	44.6	3.1	25.8
증권거래세	8.8	8.3	10.3	1.5	17.1	2.0	23.8
종합부동산세	3.6	5.1	6.1	2.5	70.3	1.0	19.9
기타	49.3	54.6	57.0	7.7	15.5	2.4	4.4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2021.2.11.

1) 본문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2022.2.) 보고서의 Ⅱ.2.2021년 국세수입 전망 및 초과세수 발생원인 분석을 기초로 작성

이하 본문에서는 금년 예·결산 차이의 주요 원인과 과거 국내외 주요 예·결산 차이 발생사례에 대해 분석

2. 2021년 국세수입 예·결산 차이의 주요 원인 분석

2021년 국세수입 초과세수는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자산세수[2] 증가, 국내외 경제의 빠른 회복세, 법인영업실적 개선 등에 주로 기인

가. 자산세수의 호조

2021년 자산세수는 시장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예산 대비 높은 수납실적을 시현

- 자산세수는 다른 세목에 비해 비교적 변동성이 큰 특징을 지님
  - ➢ 최근 5년(2016~2020년)간 세목별 연평균 증가율: 국세수입 4.2% vs. 양도소득세 14.7%, 상속·증여세 18.0%, 증권거래세 18.3%, 종합부동산세 29.2%
- 2021년의 자산세수에서의 예산과 실적의 차이는 시장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 자산세수의 예산과 실적의 차이는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기조 및 유동성 확대에 따른 자산가격의 상승과 함께 자산세수의 세율체계, 제도개편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

국내경제는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기조의 유지로 유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이러한 유동성의 확대가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0년 하반기 이후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유동성 증가율은 최근 3년간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확대
  - ➢ 한국은행 기준금리: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0.5% → (2021년 하반기) 1.0% vs. (2019년말) 1.25%
  - ➢ M2(말잔기준): 2018년 2,700조원 → 2021년 11월 3,596조원(연평균 10.0% 증가)

2) 이하 자산세수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를 의미

그림 1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유동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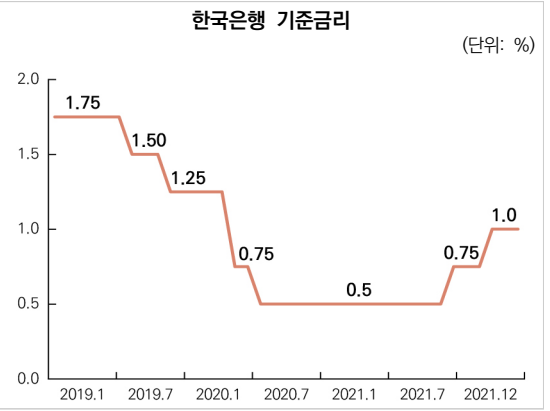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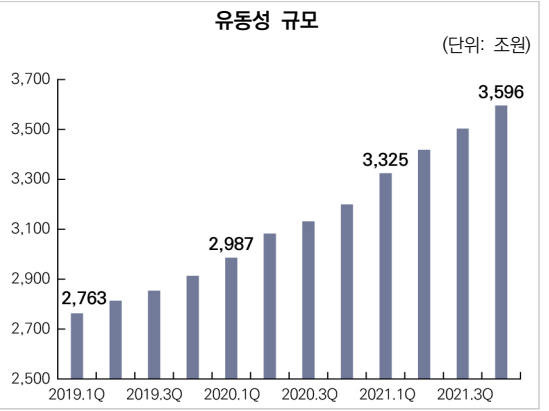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 유동성 확대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증대시켜 부동산 가격이 상승
  - ➤ 부동산 가격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로, 2021년 매매가격 및 공시가격 상승률은 2020년 상승률을 상회
    * 부동산 가격 상승률('21년): (매매가격) 토지 4.2%, 주택 9.9%, (공시가격) 토지 10.0%, 주택 16.3%
  - ➤ 특히, 매매거래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일반주택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시현
    * 주택 유형별 중위가격 기준 상승률('21년): 일반주택 △3.2%, 아파트 16.7%
  - ➤ 한편,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증여거래는 2021년 상반기 기준 증가
    * 부동산 매매거래량 증감률('21년): 주택 △15.6%, 토지 △1.8%
      증여거래('21년 상반기): 주택 8.0만호(전년동기 대비 32.4% 증가), 토지 19.6만필지(29.6%) 증가

그림 2 부동산 유형별 매매가격 및 공시가격 상승률: 전국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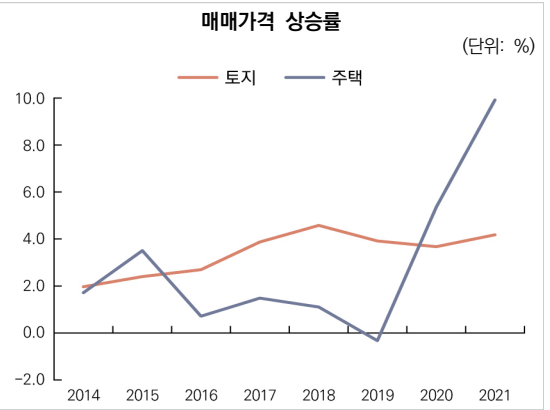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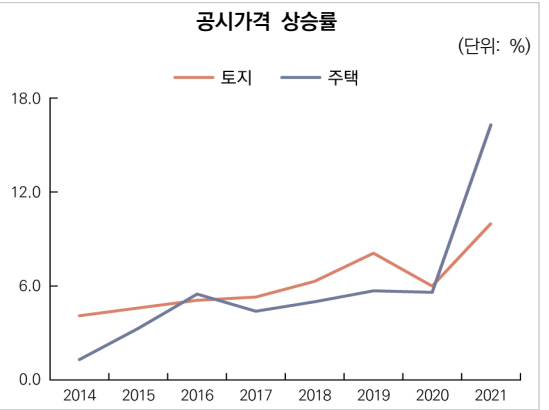

주: 1. 매매가격은 각 연도 12월(2021년은 11월) 전년동월대비 주택매매가격지수 및 지가지수 상승률
2. 공시가격은 토지 및 주택의 세부유형의 공시가격 상승률의 가중평균(가중치: 호수, 필지수) 값
자료: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양도소득세 등 자산세수의 세율체계, 제도개편 등의 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산세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양도소득세수는 매매거래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산가격의 상승 등에 영향을 더 크게 받아 세수변동성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존재
  -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은 자산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가격차이에 의해 결정되므로, 수년 동안 누적된 가격 상승효과가 매도시점이 귀속되는 연도의 세입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초과누진세율체계로 인해 과세표준 증가율보다 세수가 더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음
  - ➢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증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과세표준 증가율보다 세수증가율이 더 높을 가능성 존재
- 한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율 인상, 공제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 존재

표 2 2021년 시행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제도변화

세목	주요 제도변화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소득세 기본세율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42%→45%) •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6~45%) → 60%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중과세율: 기본세율+10~20%p → 기본세율+20~30%p - 주택 수 산정 시 주택 수에 분양권 포함하여 중과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 주택분 세율 인상 - 1~2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0.5~2.7% → 0.6~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0.6~3.2% → 1.2~6.0% 단, 법인의 경우 주택보유수에 따른 비례세율(3%/6%) 적용 • 법인의 주택분 기본공제 배제: 기존 6억원의 기본공제액 배제 • 세부담 상한비율 인상 - 법인은 세부담 상한제 미적용,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 300%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20년) 90% → ('21년) 95% → ('22년 이후) 100% • 단,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액 및 고령자 세액공제율 확대로 일부 세부담 완화 - 기본공제액: 9억원 → 11억원 - 고령자 세액공제율: 10~30% → 20~40%(공제한도: 70% → 80%)

주식시장의 경우 주가지수의 상승과 거래대금의 증가가 증권거래세 증가로 이어짐

- 주식시장별 연평균 주가지수는 2020년 대비 2021년 30%를 상회하는 상승률을 보임
  - ➢ 연평균 주가지수('21년): 코스피 3,111(전년대비 40.1% 상승), 코스닥 996(32.3% 상승)
- 주가지수의 상승세와 2020년 하반기부터의 개인투자자 유입세의 지속으로 거래대금이 2021년 상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증권거래세 세수증가에 기여
  - ➢ 주식거래대금('21년): 코스피 4,820조원(전년대비 31.8% 증가), 코스닥 3,015조원(24.4% 증가)

그림 3 시장별 주가지수 및 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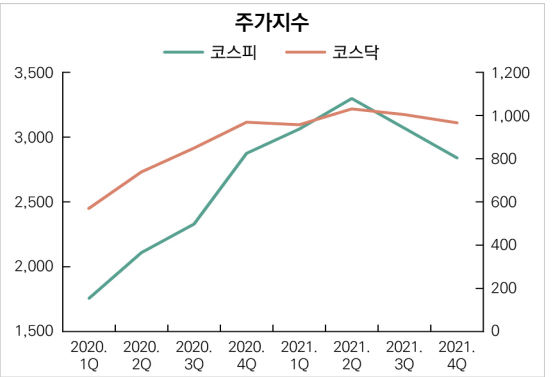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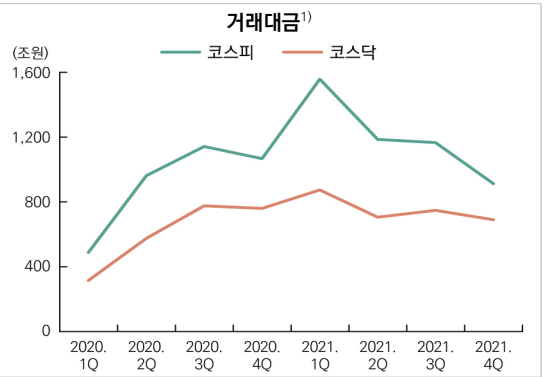

주: 1) 주식 거래대금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거래대금을 기준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통계(SEIBRO)

나. 예상을 상회한 경제회복세

예산편성 당시 전제한 경제전망에 비해 빠르게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국세수입 예산을 상회하는 실적 발생

- 정부의 본예산(2020.8.) 및 추경예산(2021.7.) 편성 당시 전제하였던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에 비해 실제 경제지표의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
  - ➤ 국세수입은 경제상황에 기반함에 따라 예산편성 당시의 전망한 경제여건이 실제와 다를 경우 예산과 실적 간 차이 발생

표 3 2021년 예산편성 당시 전제한 경제지표와 실적 비교

	2021년 예산 편성의 전제		2021년 실적
	본예산 (2020.8.)	2차 추경 (2021.7.)	
실질경제성장률(%)	3.6	4.2	4.0
- 민간소비	4.5	2.8	3.6
명목경제성장률(%)	4.8	5.6	6.2[1]
통관수출[2](억달러)	5,413 (8.5)	6,073 (18.5)	6,445 (25.7)
통관수입[2](억달러)	5,018 (9.2)	5,725 (22.4)	6,150 (31.5)
취업자 수 증감(만명)	25	25	37
소비자물가 상승률(%)	1.2	1.8	2.5
환율[3](원/달러)	1,210	1,114	1,144

주: 1) 2021년 4분기 GDP 실적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1~3분기까지의 GDP 증가율
2) ( )안은 통관수출(수입)의 전년대비 증가율
3) 원/달러 매매기준율의 평균
자료: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수출입, 민간소비, 고용시장 지표의 개선에 따라 소득세(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예산 대비 세수실적이 호조를 보임

- 글로벌 경제수요 및 대외경제 여건 개선으로 수출 증가세가 예산편성 당시 예상했던 수치를 상회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영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수가 증가
  - ➢ 통관수출액의 증가율은 전년대비 25.7% 증가한 6,445억달러로 본예산 당시 증가율 전망(8.5%)이나 추경예산 당시 증가율 전망(18.5%)을 상회
  - ➢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등과 같은 수출비중이 높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의 영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수 증가

그림 4 수출관련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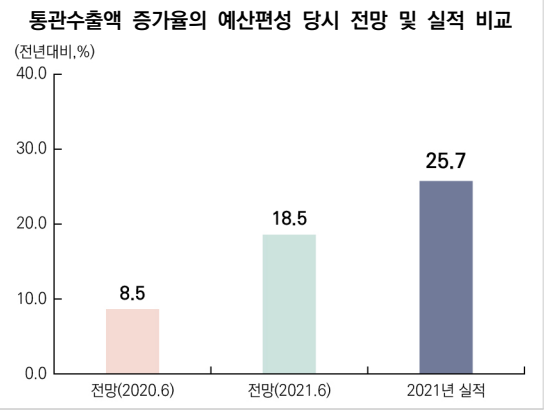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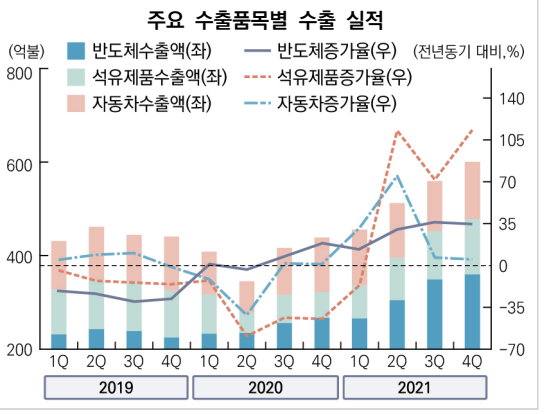

자료: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되었던 민간소비의 회복 및 이에 따른 내수 증가로 인한 소비자물가의 상승, 대외경제 여건 개선에 따른 수입 증가에 따라, 소비와 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수가 예산 대비 높은 증가세 시현
  - ➢ 민간소비는 비대면 소비의 확산, 백신접종에 따른 거리두기 완화 등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 당시 전제하였던 증가율(2.8%)보다 높은 3.6% 증가
  - ➢ 통관수입은 대외경제 여건 개선으로 전년대비 31.5% 증가한 6,150억달러를 기록하여 본예산 당시 증가율 전망(9.2%)이나 추경예산 당시 증가율 전망(22.4%)을 상회
  - ➢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에 따른 내수 증가,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추경예산 편성 당시 전제하였던 상승률 1.8%를 상회한 2.5% 상승

그림 5 소비관련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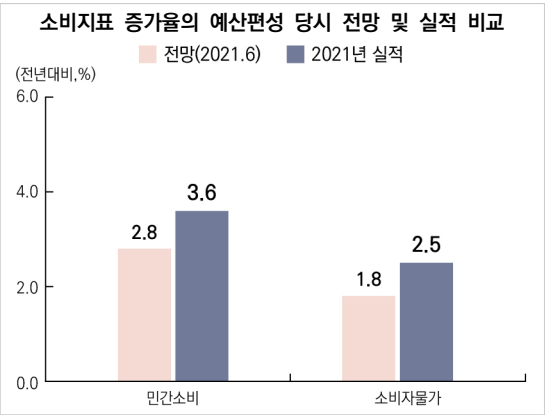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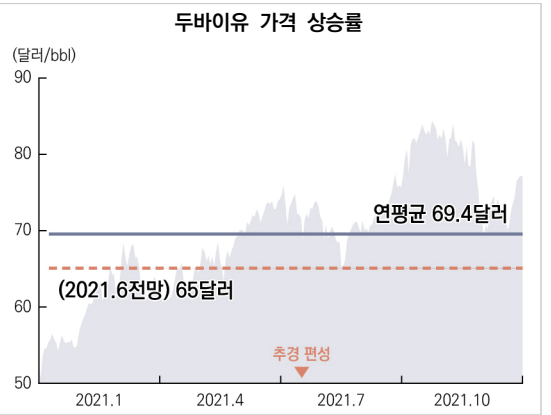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 경기회복으로 인한 고용시장 개선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은 근로소득의 증대로 이어져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으로 작용
  - ➤ 취업자 수는 추경예산 편성 당시 전년 대비 25만명 증가를 예상하였으나, 경기회복으로 인한 고용시장 수요 증가, 공공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실제로는 37만명 증가
  - ➤ 월평균 명목임금은 전년대비 4.5% 상승하여 2020년 상승률(1.0%)을 상회

그림 6 고용관련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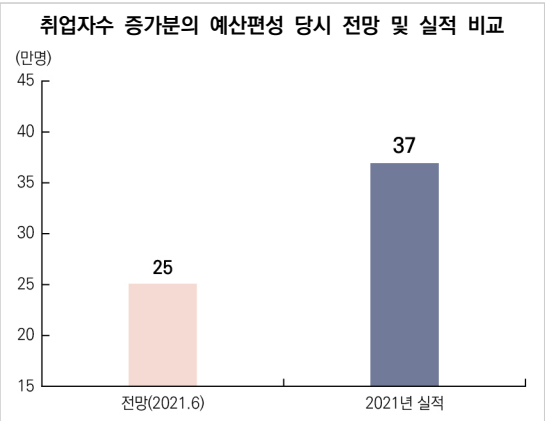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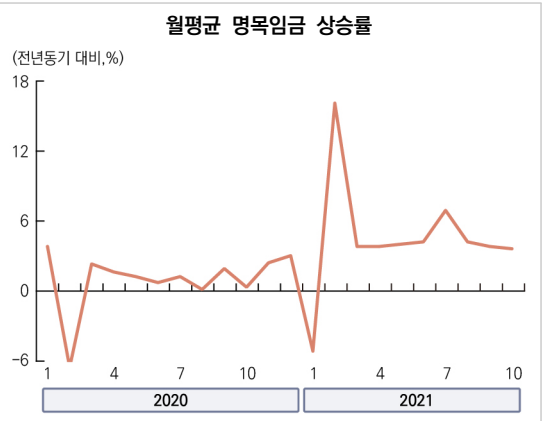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2021년 연간 고용동향

다. 기업의 영업실적 개선

2020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제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수출비중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법인세수의 높은 증가세 발생

- 2019~2021년(상반기)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율이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며,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 증가세도 확대되는 추세
  - ➢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증감률은 2020년 △2.9%에서 2021년 상반기 14.6%로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영업이익 증가율과 순이익 증가율도 각각 2020년 19.8%, 18.9%에서 2021년 69.1%, 89.7%로 확대
    *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인 영업이익률은 2020년 5.9%에서 2021년 상반기 8.1%로, 매출액에서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인 순이익률은 2020년 3.9%에서 2021년 상반기 7.8%로 개선

그림 7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경영실적 추이: 2019~2021년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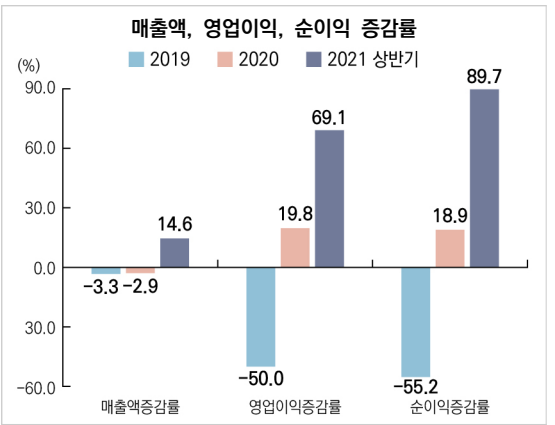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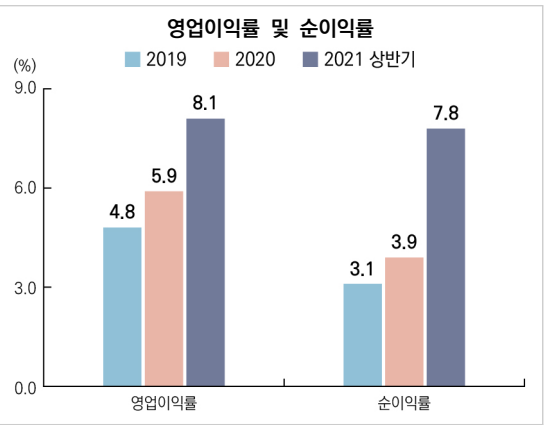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중 흑자법인은 2021년 상반기 569개(전체 상장법인 대비 82.9%)로 2020년 513개(74.8%) 대비 56개 증가
  - ➢ 업종별로는 수출비중이 높은 철강금속, 전기전자, 화학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순이익이 증가하였으며, 이외에도 내수 관련 유통업, 서비스업에서도 양호한 실적
    * 주요 순이익 증가업종: 의료정밀(592.2%), 철강금속(344.0%), 유통업(133.0%), 전기전자(104.2%), 화학(99.1%), 기계(86.2%), 서비스(55.7%) 등

- 특히 순이익 규모가 큰 반도체의 경우, 전세계적인 IT제품 수요 확대의 영향으로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영업실적 증가세를 보임
  - ➢ 2021년 상반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기준으로,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삼성전자 22.6조원(전년동기 대비 55.8% 증가), SK하이닉스 4.2조원(56.3%) 증가

전체 외감법인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살펴보더라도 대기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 및 세전순이익률 향상

- 전체 외감법인의 매출액은 2020년 전년대비 0.1% 감소에서 2021년 2분기 전년동기 대비 18.7% 증가하였으며,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2020년 3.9%에서 2021년 2분기 8.2%로 상승
  - ➢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액증가율 및 매출액세전순이익률에서 개선된 지표를 시현
    - * (매출액증가율, '21년 2분기) 대기업 20.2% vs. 중소기업 14.1%, 제조업 24.3% vs. 비제조업 12.5%
      (매출액세전순이익률, '21년 2분기) 대기업 9.1% vs. 중소기업 5.5%, 제조업 10.7% vs. 비제조업 5.1%

표 4 외감법인 수익성지표 추이: 2019~2021년 상반기

		매출액 증감률				매출액세전순이익률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1분기	2분기			1분기	2분기
전체		0.4	△1.0	7.4	18.7	3.7	3.9	7.9	8.2
	대기업	△2.3	△4.6	7.1	20.2	4.2	4.2	8.2	9.1
	중소기업	4.2	3.9	8.6	14.1	3.1	3.5	6.6	5.5
	제조업	△1.7	△2.3	10.4	24.3	4.2	4.6	8.1	10.7
	비제조업	2.3	0.0	3.3	12.5	3.3	3.3	7.7	5.1

주: 연간지표는 법인세 신고기업 중 결산월이 1~5월 법인,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비금융 법인의 전수 조사결과이며, 분기지표는 표본조사를 통한 추계 결과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국내 주요 초과세수 사례 분석

2000년 이후 국세수입 실적이 예산을 10조원 이상 초과한 사례는 2021년을 포함하여 5번 발생하였으며, 이 중 2021년은 예년의 사례에 비해 차이가 큰 편

- 예산 대비 10조원 이상의 실적이 초과한 사례는 2000년, 2007년, 2017년, 2018년, 2021년 등 5번이며, 이 중 2021년의 예산과 실적 간 차이가 규모 면에서 가장 컸음
  - ➢ 2021년의 초과세수 규모는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예년의 사례에 비해 높은 29.0조원 수준
  - ➢ 예산 대비 실적의 차이율은 2000년이 16.6%로 가장 높으며, 2007년 9.6%, 2018년 9.5%, 2021년 9.2%, 2017년 5.7% 순
    - * 단, 차이율이 2021년보다 높은 2000년, 2007년, 2018년은 세입경정이 발생하지 않아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차이가 없으므로, 본예산을 기준으로 차이율을 산정하면 2021년이 5번 중 가장 높은 수준

2021년은 과거 사례와 달리 자산세수가 예산과 실적의 차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

- 세목별로 예산과 실적의 차이를 살펴보면, 2021년을 제외하고는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예산과 실적의 차이를 주로 설명하는 세목으로 나타남
  - ➢ 2000년, 2007년, 2018년은 법인세가, 2017년은 부가가치세가 예산과 실적의 차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으로 나타남
  - ➢ 2021년의 경우, 앞의 사례와 달리 양도소득세(10.9조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법인세(4.3조원), 근로소득세(3.9조원), 상속·증여세(3.1조원) 순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외에도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세수의 예산 대비 초과세수는 17.1조원으로 전체 초과세수 대비 비중이 60%

표 5 주요 초과세수 사례: 2000년 이후

(단위: 조원, %)

연도	본예산 (A)	추경예산 (B)	실적 (C)	예산 대비(C-B)[2]		세목별 차이
				차이	차이율	
2000	79.7	좌동	92.9	13.2	16.6	법인세(6.5조원), 증권거래세(1.9조원), 부가가치세(1.5조원) 등
2007	147.3	좌동	161.5	14.2	9.6	법인세(4.9조원), 소득세 신고분(4.9조원)[3] 등
2017	242.3	251.1	265.4	14.3	5.7	부가가치세(4.5조원), 양도소득세(3.0조원), 법인세(1.9조원) 등
2018	268.1	좌동	293.6	25.4	9.5	법인세(7.9조원), 양도소득세(7.7조원) 등
2021	282.7	314.3	343.3[1]	29.0	9.2	양도소득세(10.9조원), 법인세(4.3조원), 근로소득세(3.9조원), 상속·증여세(3.1조원) 등

주: 1) 2021년은 1~11월 국세수입 실적과 전년도 12월 세입 등을 반영하여 전망
2) 추경예산 편성 당시 세입경정이 발생한 경우 추경예산을, 그 외는 본예산을 기준
3) 2010년 이전 자료에는 소득세 신고분, 원천분으로 구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통계시스템(NABOSTATS)

4. 소결

2021년 국세수입 실적은 344.1조원으로 추경예산 314.3조원 대비 29.8조원(9.5%)을 초과하여 발생하였으며, 예산과 실적의 차이는 주로 자산세수 호조, 예상을 상회한 경기회복세, 기업의 영업실적 개선 등에 기인

- 자산세수의 호조는 저금리 기조 및 유동성 확대에 따른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높은 상승세와 함께 자산세수의 초과누진 세율체계,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 등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
- 정부가 예산편성 당시 전제한 주요 경제지표 대비 경제성장률, 수출입, 소비,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예상치보다 개선됨에 따라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실적이 예산을 상회

- 2020년 하반기부터 경제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등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법인세수가 증가

국세수입 예·결산상 대규모 차이가 발생하면 재정효율성 저하와 정책 신뢰도 저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재정건전성 및 재정의 경기대응력을 악화시킬 수 있음

- 우리나라 및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예·결산상 세수오차가 구조적인 재정지출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Journard and Andre, 2008 등)
  - ➤ 세수가 예산을 대규모로 초과하는 경우 세계잉여금 확대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규모 증대와 구조적인 재정지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 반대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같은 재정위기시 세수가 예산을 하회하는 경우,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국채발행을 허용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 예산을 초과하는 실적 발생은 주로 예상을 상회하는 경기회복에 기인하는데 초과세수가 재정지출 증가로 이어질 경우,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존재
- 자산세수 호조 등 일시적인 세수증가를 구조적인 세수여건 호조로 오인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재정수지 악화를 막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의 인상률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

여 은 구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73)

1. 분석배경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인상률은 매년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결정되며, 최근 물가상승률(2017~2021년간 연평균 1.2%)보다는 높게 책정되는 경향(2017~2021년간 연평균 4.1%)

- 보상금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 및 고령, 무의탁 등 보상금 수급권자의 개별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를 지칭하며, 본 고에서는 국가보훈처의 '보상금'사업 상의 보상금과 부가수당을 통칭하여 '보상금'이라 명명함
- 보상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유사 사회보장제도인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산재보험 등의 연금액이나 재해보상금의 조정은 물가상승률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하지만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부처간 예산 협의 및 국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되고 있어, 보상금 재정의 안정성·형평성·객관성 등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음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금 인상률의 객관적 기준 설정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본 고에서는 최근 입법 동향을 고려하여 보상금 인상률 변화에 대하여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여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2.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금 현황 및 입법 동향

국가보훈처의 '보상금'사업에서 보상금은 아래 3개 법령에 근거에 근거하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각 유족을 대상으로 지급됨

- 보상금 근거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처의 '보상금'사업의 예산은 2022년 3조 1,975억원으로 전체 보훈 세출예산(5조 7,211억원)의 55.9%를 차지하고 있는 의무지출 사업임[1)]

1) '보상금'사업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상금과 부가수당으로 구분하여 편성됨

➤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해서 지급[2)]

표 1 최근 5년간 보상금 사업 예산 현황: 2018~2022년

(단위: 억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증가율(%)
보상금		27,438	28,131	29,444	30,593	31,975	3.9
	보상금	24,755	25,416	26,723	27,388	28,789	3.8
	부가수당	2,683	2,715	2,721	3,205	3,186	4.4

주: 보상금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부가수당에는 중상이부가수당, 고령수당, 전상수당, 무의탁수당, 부양가족수당, 그외수당(독자사망수당, 부모부양수당, 2명사망수당 등)이 포함

자료: 국가보훈처, 2021년,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최근 관련 법률의 입법 동향을 보면, 보상금 등 지급수준을 전국가구의 소비지출액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인상률 기준을 객관화 하기 위한 내용의 법률안도 발의

- 제21대 국회에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6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9건, 「국가보훈 기본법」 8건 등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음[3)]
- 이 가운데 보상금 관련한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건, 「국가보훈 기본법」 2건임

표 2 보상금 관련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재정소요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재정수반요인	5년간 재정소요 (연평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2021.3.8.)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를 보상금을 받지 않는 선순위 손자녀 등으로 확대	1조 485억원 (2,097억원)
	윤주경의원 (2021.3.24.)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를 손자녀의 자녀까지 포함	향후 5년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2021.3.24.)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금 월지급액을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8,257억원 (1,651억원)
	이주환의원 (2021.7.23.)	보상금 지급 자녀 연령 상향[1)]	22억원 (4억원)
	김도읍의원 (2021.7.28.)		
	이정문의원 (2021.8.5.)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3) 국회의안정보시스템(2022. 2.4.)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재정수반요인	5년간 재정소요 (연평균)
	강민국의원 (2020.6.22)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등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8,018억원 (1,604억원)
	김성원의원 (2020.6.24.)	전몰군경·순직군경,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보상금 인상	3,778억원 (756억원)
	송옥주의원 (2021.3.11.)	무공수훈자의 보상금 등 병급허용	4,088억원 (818억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2021.6.24.)	보상금을 1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30 이상	871억원 (174억원)
	강민국의원 (2020.11.13.)	재해부상군경 7급 사망 시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40억원 (8억원)
	이정문의원 (2021.8.5.)	보상금 지급 자녀 연령 상향[2]	0.75억원 (0.15억원)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2021.4.13.)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인상률과 전국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보훈급여금 지출액 결정	
	유기홍의원 (2021.11.26.)	보상금 등 지급수준을 전국가구의 소비지출액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도 고려	

주: 1) 보상금 지급 자녀 연령 상향 내용의 3개 법률안을 반영한 대안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무위원장, 2021.12.8.)은 2021.12.9. 가결되었음
2) 이정문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1.12.9. 가결되었음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2022. 2.4.)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보상금 인상률 변화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

가. 인상률 변화 시나리오 및 지급단가

보상금 인상률은 3개의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 4.1% 적용(시나리오 1), 매년 5% 인상(시나리오 2), 물가상승률 연동(시나리오 3)에 따라 산출하고, 부가수당의 월지급액은 최근 5년간 증감이 없었으므로[4], 추계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

- (시나리오 1: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 4.1% 적용, 기준선) 보상금의 최근 5년간 인상률의 평균은 4.1%로 나타나 이를 적용하여 향후 지급단가를 추정
  - ➤ 보상금의 인상률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부처 간 예산 협의나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정책적으로 매년 결정하고 있는 상황임
  - ➤ 따라서 본 고에서는 보상금의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4.1%)과 동일하게 향후 추계기간에도 적용하며, 이를 기준선으로 가정

4) 단, 부가수당 중 중상이부가수당의 경우 보상금 1급1항은 보상금 월지급단가의 75%, 1급2항은 55%, 1급3항은 35%로 책정되므로, 보상금 인상율에 따라 연동되어 있고, 전상수당은 전투에서 부상당했을 때 전상군경에게 지급되는 보수로 2020년 2만3천원에서 2021년에 9만원(6.7만원 증가)으로 인상되었고, 2022년에는 단가 동결

- (시나리오 2: 매년 5% 인상) 보상금의 월지급액 인상률 상향 등 관련 개정안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상금의 인상률을 매년 5%씩 가정하여 추정[5)]
  - ➢ 최근 5년간 보상금 인상률이 3~5.0% 내외로 나타나 5.0%는 인상률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보이고, 국가보훈처에서 기준 중위소득 등을 감안한 중기재정계획 상의 보상금 인상률도 5%를 적용한 바, 본 고에서도 5%를 적용하여 산출함[6)]
- (시나리오 3: 물가상승률 연동) 보상금의 월지급액 인상률 기준을 유사 사회보장제도에서처럼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7)]을 적용하여 지급단가를 추정
  - ➢ 국가유공자 중 상이군경 1급1항(월 307.3만원)의 보상금(기준보상금)이 2020년에 전국 3인 가구 가계소비지출액(월 307.2만원) 수준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8)], 공무원연금, 산재보험과 같은 유사 사회보장제도와 같이 임금상승률 또는 물가상승율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

표 3 최근 5년간 보상금 월지급액 및 인상률 현황: 2018~2022년

(단위: 천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증가율
보상금 월지급액	438~5,521	453~5,714	482~6,000	496~6,180	521~6,489	4.1
보상금 인상률(%)	5.0	3.5	5.0	3.0	5.0	4.1

자료: 국가보훈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4 부가수당 월지급액 현황: 2022년

(단위: 천원)

	중상이부가수당	고령수당	전상수당	무의탁수당	부양가족수당	양육수당	그외수당
부가수당	735~2,492	97~149	90	274	100	50~555	149~274

자료: 국가보훈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국가보훈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연구용역보고서인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보상은 일반 국민들의 사회보장 수준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 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 지표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등 3~5년을 주기로 보훈급여금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 지급수준을 보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308쪽)

6) 정부는 물가상승률 이외에도 경제성장률·중위소득 상승률·최저임금상승률 등 주요 사회경제지표 변화율에 연동되는 보상금 인상 지수를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2024년에 추진 계획 중(국가보훈처, '보훈급여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20쪽, 2020.12)

7)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2022년 1.6%, 2023년 1.6%, 2024년 1.5%, 2025년 1.5%)은 2021.9.30. 기준의 전망치로 추후 거시경제변수 전망치 변화에 따라 보상금 전망결과의 변화 예상(2026년도 및 그 이후 년도는 2025년과 동일하게 1.5% 적용하여 추계)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표 5 국내 유사 사회보장제도 및 해외 보훈제도 조정지수 비교

	국내				국외		
	보훈보상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산재보험	미국	호주	캐나다
대상	보상금	군인연금 연금액	공무원연금 연금액	산재보상보험 급여	상이보상금	복무연금	참전군인연금 연금급여액
조정지수	국회 심의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60세 이전)전체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 (60세 이후)물가상승률	가계생계비지수 (COLA)와 연동	물가지수, 남성평균주당소득, 연금 수혜자 생계비지수	물가상승률
조정주기	1년	1년	1년	1년	1년	6개월	1년

자료: 임완섭 외. (2017). 국내외 보훈보상 유사제도 보상금 지급수준에 대한 비교연구, 〈표 2-29〉, 〈표 4-7〉 일부 발췌 수정

나. 대상자 추계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본인과 유족으로 구분하여 성별·연령별, 대상자 실적치에 사망률, 진입률, 이탈률을 적용하여 코호트요인법을 적용하거나[9], 대상에 따라 과거 5년간 연평균증감률 등을 적용하여 추정

- 보상금은 독립유공자 5개 등급, 상이군경 11개 등급, 보훈보상대상자 11개 등급, 독립유공자 유족 11개 등급 등 본인 및 유족을 합하여 총 59개 등급별로 구분하여 대상자를 추계하였음

부가수당 대상자는 과거 5년간 연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추정

- 부가수당에는 중상이부가수당, 고령수당, 전상수당, 무의탁수당, 양육수당 부양가족수당, 그외수당[10]이 포함되며, 부가수당 대상자는 과거 5년간 연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
  - ➢ 보훈보상대상자 중 중상이부가수당 1급1항, 1급2항 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중 부양가족이 있을 때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 등의 경우 최근 5년간 증가추세로 나타나는 반면, 상이군경 중상이부가수당, 전상수당, 무의탁수당, 양육수당 등 대부분의 수당 대상자는 감소 추세임

9)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9년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인 『국가보훈대상자 예측모형 개발 및 보훈급여금 전망』의 모형 결과를 인용하여 추정
10) 본 고에서 그외수당은 독자사망수당, 부모부양수당, 2명사망수당, 3명사망수당, 4명사망수당 등을 통칭

표 6 보상금 대상자

(단위: 명)

근거법률	대상자	2023	2024	2025	2026	20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8	8	7	5	4
	유족	6,568	6,567	6,543	6,520	6,47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111,205	110,339	109,614	109,026	108,557
	유족	67,381	68,314	69,112	69,787	70,34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6,832	7,330	7,818	8,296	8,763
	유족	1,529	1,651	1,768	1,882	1,993
	합계	193,523	194,209	194,862	195,516	196,14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7 부가수당 대상자

(단위: 명)

근거법률	대상자	2023	2024	2025	2026	20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중상이부가수당	1,183	1,142	1,103	1,067	1,032
	고령수당	108,567	107,429	106,229	104,991	103,722
	전상수당	58,720	58,096	57,478	56,866	56,261
	무의탁수당	9,605	9,218	8,847	8,491	8,149
	부양가족수당	29,921	30,439	30,886	31,273	31,611
	양육수당	126	108	93	80	69
	그외수당	735	718	701	684	668
	합계	208,857	207,150	205,337	203,452	201,51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추계 결과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시나리오1)을 기준으로, 매년 5% 인상(시나리오2) 적용 시 추가재정소요는 연평균 870억원씩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반면 물가상승률(시나리오3) 적용 시 연평균 2,448억원씩 감소될 것으로 예상

- (시나리오 1: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 기준선)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 4.1% 적용 시 향후 5년간 연평균 3조 6,096억원으로 추정[11)]
- (시나리오 2: 매년 5% 인상) 보상금 단가의 연평균인상률 5% 적용 시 연평균 3조 6,966억원으로 추정
- (시나리오 3: 물가상승률) 보상금의 월지급액 인상률을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시 연평균 3조 3,648억원으로 추정

11) 보상금 사업의 경우 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연평균 4.3%씩 증가

표 8 보상금 인상률 변화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 2023~2027년

(단위: 억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 기준선)	33,249	34,609	36,029	37,519	39,076	180,482	36,096
시나리오2(5%)	33,503	35,142	36,869	38,696	40,621	184,832	36,966
시나리오3(물가상승률)	32,520	33,074	33,636	34,213	34,798	168,242	33,648
추가재정소요(시나리오2-시나리오1)	254	533	840	1,177	1,545	4,350	870
추가재정소요(시나리오3-시나리오1)	-729	-1,535	-2,393	-3,306	-4,278	-12,240	-2,44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향후 논의과제

국가유공자의 보상 수준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가진 보상금 인상률 기준이 마련될 필요

- 앞서 보상금 인상률 변화에 따른 재정소요를 살펴본 바와 같이 보상금은 현실적으로 물가상승률 보다는 높은 인상률로 매년 지급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한다는 가정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출에 대한 최소한 필요한 규모를 산출하고, 인상률 가정별로 지출규모를 비교하였음

- 현재 보상금의 지급단가의 인상률에 대하여 객관적인 인상지표인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도록 하는 관련 법안 등이 발의 중으로, 보상금의 합리적 준거지표를 설정하고, 국가유공자의 보상 수준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가진 보상금 인상률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재정추계&세제 이슈

코로나19 이후 조세정책에 대한 논의 동향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세제 및 재정지원 동향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영국편-

코로나19 이후 조세정책에 대한 논의 동향

- OECD의 "Tax and Fiscal Policies after the COVID-19 Crisis(2021.10.)" 등을 중심으로 -

김 효 경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47)

1. 논의 배경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 경제는 소비·수출 확대 등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물가상승, 금리인상 및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도 증가하는 추세

- IMF는 2022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당초 3.1%('21년 10월)에서 최근 3.0%('22년 1월)로 하향 조정[1)]
  - ➤ IMF는 대내외적 코로나 관련 리스크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신속한 정책대응이 중요하며, 향후에는 탄력적·친환경적·포용적인 방향에서 중기 성장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조언[2)]

이에 따라 조세정책 측면에서도 코로나19 및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과 함께 팬데믹 이후 정책 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

- OECD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
  - ➤ "Tax Policy Reform 2021"(2021.4.21.) 및 "Tax and Fiscal Policies after the COVID-19 Crisis"(2021.10.13.)
- 이에 OECD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각 국이 시행한 조세정책을 간략히 정리하고, 코로나19 이후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OECD의 조언을 소개함

1)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21년 10월) 4.9% → ('22년 1월 전망) 4.4%
2) IMF, "IMF Staff Completes 2022 Article IV Mission to Republic of Korea"(2022.1.26.)

2.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OECD국가의 조세정책 동향[3)]

OECD(2020)는[4)] 코로나19 위기의 진행국면에 따라 조세정책의 대응이 유동성 확보 및 소득지원, 경기부양, 세수확보의 기조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시

- 바이러스의 확산 및 봉쇄조치로 인한 위기 시점에는 유동성 공급 및 소득보조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필요
-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는 전환기에는 경기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재정부양책 등 재정적 자극이 필요
- 포스트 코로나 시점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조세정책의 변화가 필요

그림 1 코로나19 진행국면별 조세지원 정책의 대응 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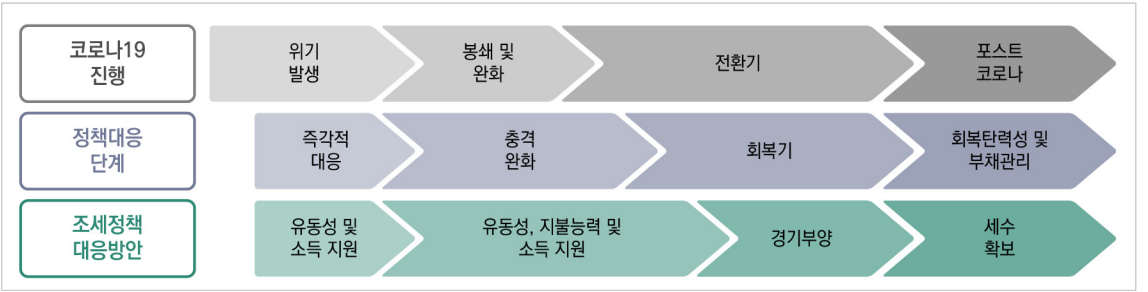

자료: OECD, "Tax and Fiscal Policy in Response to the Coronavirus Crisis: Strengthening Confidence and Resilience", 2020.5.19. 및 국회예산정책처,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대책 및 시사점", 추계 & 세제 이슈 제11호, 2020.5.29.

OECD(2021)의 조사에[5)] 따르면, 2020년 이후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조세정책은 납부유예 등 조세지원, 투자 촉진 등 부양정책, 고소득 구간 등에 대한 과세확대의 유형으로 구분

표 1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각국의 조세정책 유형 구분

구분	조세감면 (Relief)	회복을 위한 부양정책 (Recovery-oriented stimulus)	과세확대 (Tax increase)
목적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 완화	총수요 및 투자 촉진	위기대응 국면에서의 정부재정 확보
조세정책 유형	• 납부유예 • 과세신고 유예 • 조기환급 • 손실이월공제 • 한시적 면제 • 한시적 세율인하	• 투자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 법인세 등의 완화 • 고용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 한시적 부가가치세율 인하 • 거래세 경감	• 고소득 구간에 대한 소득세 확대 • 건강세(health excise tax)[1)] 확대 • 환경세 확대 • 재산세 확대 • 사업세 확대

주: 1) 담배, 알코올, 가당음료 등에 대한 과세를 가리킴
자료: OECD의 "Tax Policy Reform 2021"(2021.4.21.)

3) 동 자료는 OECD의 "Tax Policy Reform 2021"(2021.4.21.)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함
4) OECD, "Tax and Fiscal Policy in Response to the Coronavirus Crisis: Strengthening Confidence and Resilience", 2020.5.19.
5) 동 설문조사는 2021년 1월 실시됨

-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업 및 가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납부유예 정책과 소득 지원 등을 우선 실시
  - ➤ 납부유예는 소득세(20개국)·법인세(27개국)·부가가치세(30개국) 등 주요 세목에 폭넓게 적용
  - ➤ 한시적으로 취약가구 및 자영업자의 소득세 공제감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 부담 수준 완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 및 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정책 활용
  - ➤ 투자·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가속상각 제도 등을 확대하고,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의료용품·여행·숙박·음식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
- 일부 국가는 정부의 재원 확보를 위해 고소득 구간에 대한 세부담 강화 등을 병행
  - ➤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대두되었던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여 탄소세 등 환경관련 과세도 확대되는 추세

그림 2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각국의 세목별 조세정책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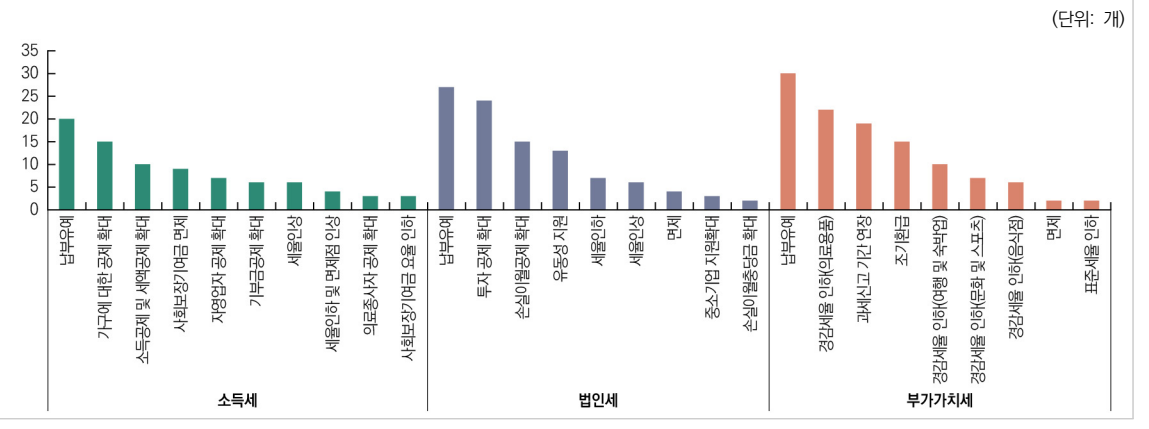

주: 2021년 1월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임
자료: OECD의 "Tax Policy Reform 2021"(2021.4.21.)

OECD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위기대응 정책을 활용하되, 향후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각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조세정책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고 조언

- 코로나19 지원정책의 중단시점은 국가별로 코로나19 진행국면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설정할 필요

[참고] 우리나라는 납세자의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한 납부유예 및 조기환급 등 세정지원과 함께 소득 및 자금조달·소비촉진·고용 및 투자활성화 부문의 조세감면 등 한시적 지원을 확대

- 납부유예('20년 32.3조원, 국세청 승인기준) 및 그 외 조기환급 등('20년 7.9조원)
  * '21년 상반기 기준 납부유예 8.1조원, 조기환급 등 4.6조원
- 코로나19 확산 직후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한시적 조세지원 조치,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소비지원 조치는 적용기한 연장
-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고용시장 활성화 및 양극화 완화를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확대 연장, 경제회복 및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술·시설투자 공제 확대 등의 지원도 강화 추세

표 2 2020년 이후 실시된 코로나19 관련 주요 조세지원정책 내용

구분	주요 항목
유동성 확보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결손금 조기환급('20년 상반기) •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법인세 30~60% 감면('20년) •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24년까지)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납부유예 및 조기환급('20년 이후) 등
소득보조 및 자금조달 원활화	• 연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감면('20년) • 임대사업자의 상가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50% 세액공제('20년~'22년) • 코로나19 피해 법인 등의 결손금·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21년 이후)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및 공제율 인상('20년~'22년) 등
소비촉진	• 접대비 손금불산입 한도 최대 0.05%p 상향('20년) • 소상공인으로부터 선결제·선구매시 1% 세액공제('20년 4~7월분)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20년 3~7월분: 15→최대 80%, '21년: 전년대비 증가분 10% 추가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인상('20년: 30만원, '21년: 전년대비 증가분 100만원 추가) •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20년 3~6월: 5→1.5%, '20년 7월~'22년 6월: 5→3.5%) 등
고용·투자 활성화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확대('24년까지) • 고용증대 세액공제 연장 및 공제한도 인상('22년~'24년) 등

3. 코로나19 이후 조세정책 방향[6)]

"2021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위한 "Tax and Fiscal Policies after the COVID-19 Crisis"(2021.10.13.)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제시

6) OECD, "Tax and Fiscal Policies after COVID-19(2021.10.)"의 주요 내용을 일부 내용을 요약함

가. 최근의 조세 환경 변화

(경제성장률 둔화) 경제성장률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축소 및 교육기회의 단절 등은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

- 팬데믹 기간 등교의 중단으로, 향후 노동시장에 참여할 학생들의 기술·생산성·수입의 악화 우려
- 다만, 코로나19 시기 서비스 부문 등을 중심으로 한 빠른 디지털화는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

(디지털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 측면의 도전이 필요해진 상황

- 긱(gig) 경제[7] 활성화로 근로자 간 조세부담 및 사회보장시스템 수준의 격차가 확대되거나, 디지털 기업 등 소수의 기업에 이익 및 무형자산이 집중되면서 법인세 측면의 대응에 대한 고민 증대
-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교육 목적의 디지털 자원에 대한 접근 및 활용기회 격차에 대한 문제의식 확대

(불평등 심화) 과거 여러 국가에서 관찰된 소득·자산 구간 간 불평등이 코로나19 위기로 심화

- 교육·에너지·의료·주택 비용 등 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계층 이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8]
- 교육격차뿐만 아니라 청년·저숙련 근로자·여성 등이 체감하는 경제적 불평등 수준은 상대적으로 확대

(고령화) G20 등 고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출산율 감소 및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를 경험

- 고령층, 가구 내 이차 소득자(second earner) 등의 노동시장 참여율 향상 등의 필요성 증대
- 공적연금 개선 및 알코올·담배·설탕 등에 대한 건강세(health tax) 활용 등의 검토 요구 제기

(환경의 경제적 영향)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심화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변동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저해 등을 야기할 우려

- 탄소세 또는 배출권 거래제 등 배출량에 대한 가격 책정은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운송부문에서 화석 연료의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기존의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도 상존[9]
- 탄소절감을 위한 제도적 변화는 저소득 가구, 특정지역의 기업 및 소기업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 부담을 야기할 가능성

---

7)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정규직 대신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경제
8) OECD,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2018.6.15. 및 OECD, "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 2019.5.1.
9) Marten, M. and K. van Dender "The use of revenues from carbon pricing",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No.43, 2019.6.5.

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의 방향

OECD는 코로나19 이후 각국이 당면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조세정책 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조하면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관점에서 성장 친화·공정한 사회·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

(1) 성장 친화적 조세정책(Growth-friendly tax policies)

코로나19 이후의 성장 친화적 조세정책은 노동시장 참여 촉진, 기술개발 및 기업투자의 확대, 생산성 향상 등 생산요소의 효율적인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할 것을 권고

(자본투자) 최근의 디지털화 확대·무형자산의 중요도 증가·시장집중도 증가·저금리 등 기업이 당면한 경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투자 지원을 위한 조세 인센티브의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 필요

- 투자 및 R&D 촉진을 위한 조세 인센티브가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상황에서 과다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10] 비용이 효과를 상회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
  - ➢ 정책목표 대상이 아닌 계층까지 수혜를 주거나 생산성 및 고용 향상에 대한 실효성이 낮은 정책 지양
  - ➢ 개발도상국[11] 및 OECD 국가[12]의 경우,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가속상각·비용공제 등 기업의 지출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가 경감세율·면제 등 소득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보다 효과적이라고 분석한 연구들이 등장
- 국제조세 부문에서도 조세정책의 확실성 및 안정성이 담보될 필요
  - ➢ 이익의 이전을 통해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다국적 기업의 경우 법인세 과세 강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 있으므로,[13]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 OECD는 최근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 공평성과 투명성을 위해 디지털세 합의안(2021.10.)*을 발표

    * [참고] 주요내용: (시장소재국 과세권 인정) 매출 200유로 및 수익률 10% 이상의 글로벌 기업에 대해 통상이익률(10%)을 초과하는 이익의 25%의 과세권을 각 시장소재국에 배분

    (글로벌 최저한세) 매출 7.5만유로 이상 기업에 대해 글로벌 최저한세 15% 적용

10) IMF, OECD, UN, World Bank, Options for Low Income Countries' Effective and Efficient Use of Tax Incentives for Investment, A Report to the G20 Development Working Group, 2015.10.15.
11) Klemm, A. and S. Van Parys , "Empirical evidence on the effects of tax incentives",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Vol. 12, 2012.
12) Maffini, G., J. Xing and M. Devereux, "The Impact of Investment Incentives: Evidence from UK Corporation Tax Returns",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Vol. 11, 2019.
13) Sorbe, S. and Å. Johansson, "International tax planning, competition and market structure",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358, 2017.2.16.

(노동시장 참여) 코로나19의 영향 및 점차 심화되는 고령화 추세로 고용 시장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할 필요

-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체 조세부담 중에서 사회보장기여금(SSC)보다 누진적인 성격의 근로소득세 비중을 높임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근로 참여를 유도[14)]
- 근로유인 제공을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의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그 외 조세부담이 비공식·여성·저숙련·가구 내 이차 소득자 등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파악할 필요[15)]

(생산성) R&D·데이터·소프트웨어 등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 및 성장 제고에 효과적이므로 이를 적극 지원하되, 무형자산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산업에 조세지원을 집중할 필요

- 신생기업·중소기업·디지털 및 지식집약적 산업의 경우 자금조달, 기술 습득 등의 측면에서 무형자산 투자에 대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므로,[16)] 이러한 기업에 조세지원이 집중되는 것이 효과적
  - ➢ 조세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현재 우위에 있는 사업자의 위치를 더 공고히 하거나 시장에서 생산성 격차를 더 확대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
  - ➢ 무형자산과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는 유형자산(예. ICT기반구조, 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은 시장의 선도기업과 후발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를 조정하는 데 효과적
- 국제조세 부문에서는 국가 간 조세격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자원배분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

(디지털화) 데이터 활용을 통한 세무행정 개선 및 부가가치세 기반 확충 등의 순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가상자산·가상화폐 등 새로운 과세대상에 대한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

- OECD는 디지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가이드라인을[17)] 통해 국제거래에 있어 해당 재화 및 용역의 소비지 과세원칙 및 이에 따른 권고사항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70개국 이상이 관련 제도를 개정
- 가상자산·가상화폐의 경우 중앙집중적 통제의 결여·익명성·가치측정의 문제·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의 성격 혼재·빠른 기술 변화 등으로 인한 과세 상 어려움에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OECD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할 필요

  * [참고] OECD 보고서(2020.10.)는 현 조세체계 하에서 많은 국가가 가상화폐의 교환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관련 정책 과제로 과세대상 및 소득유형 등에 관한 명확한 법령·지침 마련, 납세순응을 위한 지원, 다른 자산 과세와의 일관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조언[18)]

---

14) 근로소득에 대한 실효세율*로 추정 시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저소득층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음(OECD, "Financing Social Protection: The Employment Effect", in OECD Employment Outlook 2007.)
* 근로소득에 대한 실효세율(Tax Wedge): 기업의 총노동비용 대비 순조세부담(소득세+사회보장기여금-현금보조)의 비율

15) Thomas, A. and P. O'Reilly, "The Impact of Tax and Benefit Systems on the Workforce Participation Incentives of Women", OECD Tax Policy Working Papers, Vol. 29., 2016.

16) Demmou, L., G. Franco and I. Stefanescu, "Productivity and finance: the intangible assets channel - a firm level analysi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596, 2020.

17) OECD,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5. 및 OECD, Mechanisms for the Effective Collection of VAT/GST: Where the Supplier is Not Located in the Jurisdiction of Taxation, 2017.

(2) 공정한 사회를 위한 조세정책(Tax policies for equitable societies)

조세정책은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정책수단이며, 최근에는 세대 간 공정성·기회의 평등·성평등 확대를 위한 역할도 강조되는 추세

고소득자 및 자산가 그룹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효세율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과세 방안이 마련될 필요

- 자본이득 및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고소득자 및 자산가의 유효세율이 낮은 원인이 조세차익거래 및 이익이전 행태에 기인한다는 연구[19]와 부유한 납세자의 탈세 문제를 지적한 연구[20] 등을 참고
- 고소득자에 유리하거나 역진적 성격을 갖는 감면제도를 축소하고, 국제조세 측면에서도 과세 상 허점(loopholes) 및 국가 간 차익거래의 기회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저소득 및 취약 가구의 소득에 대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세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평등 심화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

-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확대하고 실업 축소 및 노동시장에서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질 필요
- 소득세 이외에 소비세·자산세·탄소세 부문에서도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 탄소세 시행에 따라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보상 매커니즘 등이 필요

자동화 및 디지털화의 변화 속에서 형평성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세개혁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

- 자동화에 대한 지원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의 변화가 고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거나 조세부담·재정수혜 측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 디지털화로 등장한 비전통적인 근로형태 및 긱(gig) 경제의 확산, 국제적인 납세자의 이동성 증가 등으로 인해 근로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 격차에 대한 고민도 필요

---

18) OECD, "Taxing virtual currencies: and overview of tax treatments and emerging tax policy issues", 2021.10.12.
19) Smith, K., T. Pope and H. Miller, Intertemporal income shifting and the taxation of owner-managed businesses, IFS Working Paper WP19/25, 2019.10.21. 등
20) Alstadsæter, A., N. Johannesen and G. Zucman, "Tax Evasion and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9/6, 2019.

(3)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조세정책(Taxation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

환경 친화적 기술에 대한 조세지원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가격 책정 등이 필요하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긴밀한 국제적 공조 또한 요구

-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및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것이 중대한 이슈로 대두되는 상황이며, 다양한 정책적 조합을 통해 이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 ➢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도는 오염에 대한 가격 설정에 효과적인 수단이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OECD와 G20 국가의 탄소 배출량 중 약 60%에 대해 아직 가격이[21] 책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22]
-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조세정책은 저소득층의 비용을 가중시키는 등 역진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등 보편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는 부문의 지원 등을 통해 정책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 필요

3. 요약 및 결론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조세 정책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팬데믹 회복 수준, 사회·경제적 변화·국가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제언

- OECD는 코로나19 이후 직면할 사회·경제적 변화로 고령화 및 기후변화의 문제와 함께 경제성장률 둔화·불평등·디지털화 심화의 현상을 지목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행된 조세지원 정책의 중단시점은 코로나19 확산 및 경제·재정환경 등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될 필요
-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조세개혁은 중장기적으로 각국이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고려하여 성장 친화·공정·지속가능한 환경의 관점에서 설계할 필요
  - ➢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조세정책에 대한 평가는 재정지표 등의 단일 기준보다는 환경·불평등 수준 등을 포함한 다수의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21) 탄소세 및 배출량 거래제를 통한 명시적 가격과 화석 연료에 대한 소비세 등 암묵적 가격을 포함한 개념
22) OECD, "Effective Carbon Rates 2021: Pricing Carbon Emissions through Taxes and Emissions Trading", 2021.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세제 및 재정지원 동향

이 겨 레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746)

1. 논의 배경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상향함에 따라 발전·수송·건축 등 각 분야에서 탄소저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전망

- 정부는 2021년 10월, '2030 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기존(2018년 대비 26% 절감)에 비해 14%p 높은 목표

이 중 자동차와 연관된 수송부문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향된 '2030 NDC'에 따르면 2018년 대비 37.8%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필요

-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1]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통행량 감축 정책, 대중교통체계 및 물류시스템의 친환경 인프라 구축 등 다방면의 정책 제시

표 1 수송부문 탄소배출량 및 비중

(단위: 백만톤 CO_2eq,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배출량	비중	배출량	비중	배출량	비중	배출량	비중
OECD 국가	15,612.0	100	15,613.1	100	15,669.9	100	15,380.7	100
에너지	12,602.8	80.7	12,597.1	80.7	12,638.1	80.7	12,306.8	80.7
수송	3,622.7	23.2	3,662.8	23.5	3,703.7	23.6	3,705.1	24.1
한국	693.5	100	709.7	100	727.6	100	701.4	100
에너지	602.7	86.9	615.7	86.7	632.4	86.9	611.5	87.2
수송	98.8	14.2	98.3	13.9	98.1	13.5	101.0	14.4

주: 비중은 OECD국가 전체(한국 전체) 대비 에너지, 수송 각각의 비율을 의미
자료: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http://www.gir.go.kr), OECD.stat(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51342)

1) 관계부처 합동,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2021.10.18

특히, 수송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정부는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 정책을 제시

- 친환경자동차 보급 수준은 2016년 24만대에서 2020년 82만대로 3.4배 증가하였으나, 전체 자동차 누적보급 대수 기준 비중은 3% 수준에 불과
- 정부는 친환경자동차 중심의 사회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누적보급 대수를 2030년 785만대까지 확대하여 그 비중을 전체 자동차 대비 3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

표 2 친환경자동차 누적보급 대수 목표

(단위: 만대, %)

	2020년(실적)	2025년	2030년
친환경자동차	82	283	785
전기차	13.5	113	300
수소차	1.1	20	85
하이브리드	67.4	150	400
전체 차량 중 비중	3	11	30

자료: 정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

그동안 정부는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13년 이후 구매보조금 지원,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필요한 상황

- 정부는 최근 보조금 지원 단가 하향 및 세제 감면 적용기한의 한시(1~2년) 연장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 방식에서 충전소 설치 지원, 친환경자동차관련 산업 육성 지원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책 변화를 모색
  - ➤ 구매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세제 및 재정지원은 내연기관차와의 가격차이를 좁혀 제도 도입 초기에 구매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
  - ➤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서는 구매지원 이외에도 전기 및 수소차 충전시설 확대, 내연기관차 수준의 경제성 및 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 폐배터리 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 자동차 전주기 친환경화, 미래차 분야 중소·중견기업 집중 육성 지원 등의 정책방향 제시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에 맞춰 세제 및 재정지원 대상 전환, 유류세 감소에 따른 대체 세원 확보 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어,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및 해외의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 동향을 검토하고자 함

[참고] 친환경자동차의 정의

친환경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중 에너지 효율 등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을 말함

표 3 친환경자동차 구분

	주요 구동방식	연료
전기차	모터 + 배터리	전기(충전)
수소차	모터 + 수소연료전지	수소
하이브리드	엔진 + 모터(보조) + 배터리	화석연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 + 모터(보조) + 배터리	화석연료+전기(충전)

자료: 정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

차종별 생애(연료생산 + 배터리 제조 + 주행)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수준은 전기차가 가장 낮고,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전기차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며, 내연기관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기차와 수소차는 주행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지만 연료 생산 및 배터리 생산, 폐차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됨에 따라 하이브리드차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 전기에너지 생산 시 화석연료에 대한 발전의존도*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는 동안 일반 하이브리드차 병행 보급이 환경·산업적 측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18년 화석연료 발전의존도: (세계) 석탄 38%, 석유 2.9%, 가스 23.0%
(한국) 석탄 43%, 석유 2.2%, 가스 26.4%

표 4 친환경자동차 구분별 생애 이산화탄소(CO_2) 배출량

(단위 : t CO_2-eq)

구분	합계	(Well-To-Wheel)		(Vehicle Cycle)	
		연료 생산 (Well-To-Tank)	주행 중 배출 (Tank-To-Wheel)	배터리 (NMC111 기준)	조립·폐차·재활용등
전기차(40kWh)	22.8 ~ 24.2	14.8	-	2.6 ~ 4.0	5.4
전기차(80kWh)	25.4 ~ 28.2	14.8	-	5.2 ~ 8.0	5.4
내연기관차	34.3	4.6	23.7	-	6.0
하이브리드차	27.5	3.4	17.6	0.3	6.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24.5	10.2	7.1	0.8	6.4
수소전기차	27.5	17.7	-	0.3	9.5

주: 배터리 배출량은 공정효율에 따라 상이, 전력생산배출량은 '18년 전세계 평균 발전원별 발전량 기준, 수소연료는 개질 기준
자료: 정부의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국내 친환경자동차 세제 및 재정지원 현황

자동차에 부과되는 조세는 구매, 보유, 운행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매단계에서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이 과세되고, 보유단계에서는 자동차세, 운행단계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과세됨

표 5 자동차 관련 세제 등 현황

단계	세목		과세표준	세율	
구매	국세	개별소비세	공장도가	5%[1]	
		교육세	개별소비세액	30%	
		부가가치세	공장도가+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10%	
	지방세	취득세	취득가액	2% ~ 7%	
	기타	공채 매입비	취득가액	면제 ~ 12%(지역개발채권), 면제 ~ 20%(도시철도채권)	
보유	국세	자동차세(소유분)	배기량 또는 차량대수	승용자동차	18원 ~ 24원/cc(영업용), 80원 ~ 200원/cc(비영업용)
				그 외	3,300원~100,000원/대(영업용) 18,000원~157,500원/대(비영업용)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액	30%(비영업용 승용차만 과세)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대당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경유차만 과세)		
운행	국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리터	529원/ℓ 휘발유), 375원/ℓ(경유)[2]	
		개별소비세	Kg	275원/kg(LPG 부탄)[2]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액, 개별소비세액	15%	
		부가가치세	공장도가 + 개별소비세액 + 주행세액 + 교육세액	10%	
	지방세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액	26%(비영업용 승용차만 과세)	

주: 1)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여 3.5% 적용
2)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423원/ℓ, 경유 300원/ℓ, LPG부탄 220원/kg 적용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련 조세 중 구매단계에서 발생하는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친환경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보조금 지원제도도 병행하고 있음

- (세제지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취득세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100만원/40만원, 전기자동차는 300만원/140만원, 수소전기자동차는 400만원/140만원까지 감면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납부
  - ➤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 말, 취득세의 경우 하이브리드는 2022년 말, 수소·전기자동차는 2024년 말 일몰 예정
  - ➤ 조세 감면실적을 보면,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판매량이 전기자동차에 비해 더 많기 때문에 2020년 기준 개별소비세 감면액 750억원, 취득세 감면액 1,326억원으로 전기자동차보다 더 높은 실적을 보임

표 6 친환경자동차 1대당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한도

(단위: 만원)

	개별소비세[1)]	취득세	합계	적용기한
하이브리드	100	40(경차 75)	140(경차 175)	~ 2022.12.31
전기자동차	300	140	440	개별소비세 감면: ~ 2022.12.31 취득세 감면: ~2024.12.31.
수소전기자동차	400	140	540	

주: 1)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면 개별소비세에 부가되어 과세되는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 및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액과 교육세액 합계의 10%)도 감면됨
1. 친환경자동차에 적용되는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규정도 2022년 말까지 적용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을 바탕으로 재작성

표 7 친환경자동차 조세 감면실적 현황: 2016~2020년

(단위: 억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개별소비세	하이브리드	391 (117)	531 (160)	709 (214)	883 (265)	750 (225)
	전기자동차	27 (8)	15 (5)	305 (92)	572 (172)	490 (147)
	수소전기자동차[1)]	-	-	9 (3)	69 (21)	142 (42)
	소계	418 (125)	546 (165)	1,023 (309)	1,524 (288)	1,382 (414)
취득세	하이브리드	1,000	1,361	1,500	1,639	1,326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2)]	60	204	567	522	710
	소계	1,060	1,565	2,067	2,161	2,036

주: 1. 괄호 안은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교육세 감면 실적(개별소비세 감면액 × 30%)
1) 수소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16년 12월 20일 신설되어 2017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7년까지 감면실적 자료 부재
2) 「지방세통계연감」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실적을 합산하여 집계
자료: 각 연도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구매보조금 지원)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은 2013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도입 초기보다 1대당 구매보조금이 감소하였고 하이브리드자동차는 구매보조금 제도를 폐지
  - ➤ 전기자동차는 도입 초기에 1대당 1,500만원에서 2022년 700만원까지 감소하였고, 수소전기자동차는 도입 초기 1대당 6천만원에서 2018년 이후 2,250만원으로 감소한 뒤 유지
  - ➤ 구매보조금의 예산(국비)은 2019년 3,891억원에서 2022년 2조 3,985억원까지 약 6배 증가

표 8 친환경자동차 1대당 구매보조금 및 예산 현황(국비 기준)

			2018	2019	2020	2021	2022
1대당 구매보조금 (만원)	하이브리드	일반	50	-	-	-	-
		플러그인	500	500	500	-	-
	전기자동차		1,200	900	820	800	700
	수소자동차(연료전지)		2,250	2,250	2,250	2,250	2,250
구매보조금 예산 (억원)			3,891	5,941	10,581	13,885	23,985

주: 1. 전기·수소자동차의 구매보조금은 국비 기준이며, 지방비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구매보조금 예산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중 구매보조금 예산을 발췌하여 합산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1),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을 바탕으로 재작성

3. 해외 친환경자동차 세제 및 재정지원 현황

2021년 4월 기준 22개국이 2050년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또는 내연기관자동차 금지 목표를 설정하였고 EU 27개국 및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면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추진

- 2020년까지 전세계에 보급된 전기자동차[2] 누적대수는 천만대에 이르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전기자동차 판매 대수는 전체 자동차 판매의 4.6%에 해당하는 수치
- EU 및 한국, 캐나다 등을 포함한 7개국은 2050년까지, 스웨덴은 2045년까지 수송수단에 대한 강력한 규제정책, 구매보조금, 세제혜택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함
  - EU 27개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승용차와 상업용 경량차(vans)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 성과표준(CO_2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을 적용하여 연비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무공해 및 저공해 차량에 대한 크레딧 인센티브와 초과 배출에 대한 벌금제도를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3]
  - 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2025~2050년 사이에 전기자동차(BEVs), 수소전기자동차(FCEVs), 플러그인 하이드리드자동차(PHEVs)로 압축되는 ZEV(Zero-Emission Vehicle)의 100% 판매를 목표로 함
  - 영국은 2030년까지, 중국과 일본은 2035년까지 친환경자동차[4] 판매 100% 달성을 목표
  - 스리랑카의 경우 2040년까지 전체 차량 누적대수 중 ZEV의 비중을 100%까지 확대하고자 함

2) 전기자동차(Electrified Vehicles)는 국가별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어 본 보고서의 전기자동차 정의는 배터리자동차(Battery Electric Vehicle, BEV), 수소전기자동차(Fuel Cell Electric Vehicle, FC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lug-in Hybrid Vehicle, PHEV),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Hybrid Electric Vehicle, HEV)를 모두 포함함
3) European Commision(https://ec.europa.eu/clima/eu-action/transport-emissions)
4) 각국 및 연구 기관마다 친환경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정의에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 친환경자동차(electrified vehicles)는 전기자동차(BEVs), 수소전기자동차(FCEVs), 플러그인 하이드리드자동차(PHEVs)의 포괄적 의미인 Zero-Emission Vehicle(ZEV)에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Hybrid Electric Vehicles, HEVs)를 포함하는 개념임

그림 1 주요국 친환경자동차 보급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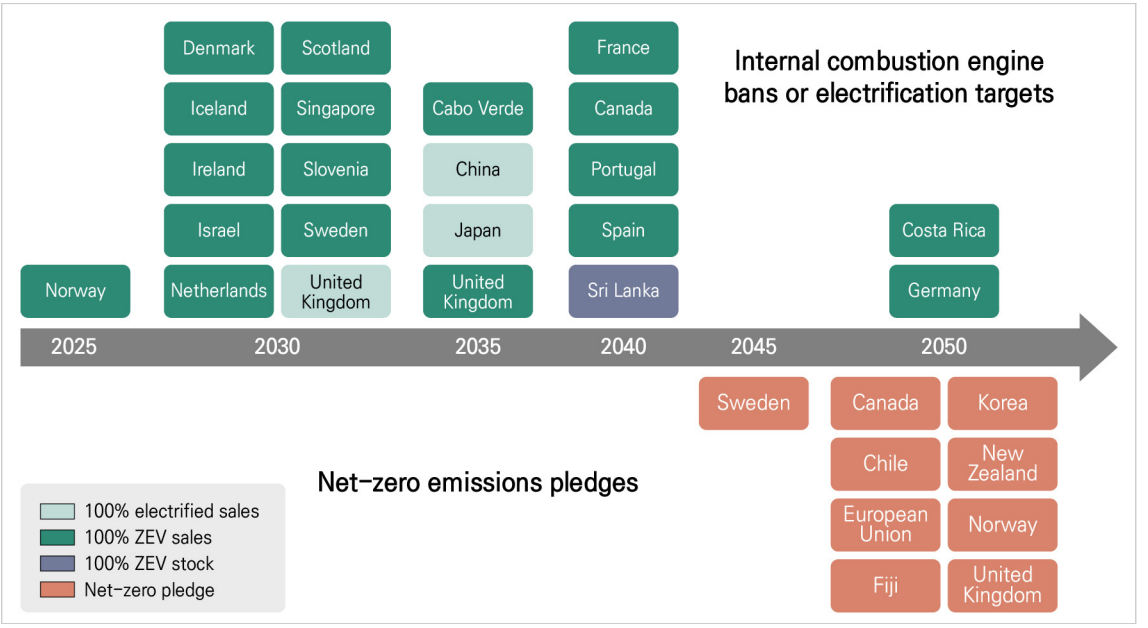

주: 1) 전기자동차(Electrified Vehicle, EV)는 배터리자동차(Battery Electric Vehicle, B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lug-in Hybrid Vehicle, PHEV), 수소전기자동차(Fuel Cell Electric Vehicle, FCEV), 하이브리드자동차(Hybrid Electric Vehicle, HEV)를 포함
2) ZEV(Zero-Emission Vehicle)은 탄소배출이 0인 차량으로서 BEVs, PHEVs, FCEVs를 포함
자료: IEA(2021), 「Global EV Outlook 2021」

각국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 지원, 전기 충전 인프라 확충 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을 주요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전기자동차 의무 판매 대수 할당 등의 규제 정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

- 재정적 지원은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며, 대표적인 수단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전기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등이 있음
  - ➢ 노르웨이가 전세계 최초로 1990년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2001년에는 부가가치세 감면을 시행함으로써 전기자동차 구입에 대한 세금의 전체 또는 절반을 감면한 이후, 2008년 미국, 2014년 세금감면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함
-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충전소 설치가 중요해짐에 따라 각국은 충전소 설치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
  - ➢ EU, 캐나다 및 미국의 주정부는 신규 건축물이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함
- 보다 빠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전환을 위해 중국 중앙정부 및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등은 세제 혜택 및 재정지원 이외에도 전기자동차 판매에 대한 의무규제를 통해 민간의 역할을 부여하는 정책도 함께 시행

➤ 캘리포니아주의 무공해차 의무 규제(ZEV mandate)[5] 정책은 그 효과성이 입증됨에 따라 콜로라도, 코네티컷, 메인,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오레곤,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등 11개 주에 도입되었으며, 중국 중앙정부는 2017년, 캐나다의 퀘벡주와 브리티시 콜럼비아주는 2020년부터 도입

표 9 해외 탄소중립 승용차 보급 정책

	구분	EU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
자동차	세제혜택 및 재정지원	○	○	○	○	○
	친환경자동차 의무 할당 규제 (ZEV mandate)	-	캘리포니아: 2025년까지 22% EV 크레딧 그 외 11개주: 각기 다른 기준 설정	NEV(New Energy Vehicle) dual credit system: 2019-2020년 10-12%, 2021-2023년 14~18% EV 크레딧	국가단위 ZEV 판매 의무 규제: 2025년까지 10%, 2020년 30%, 2040년 100% 브리티시 콜럼비아 및 퀘벡: 2020년 9.5%, 2025년 22% EV 크레딧	-
	연비 규제	○	○	○	○	○
충전소	세제혜택 및 재정지원	○	△	○	○	○
	충전소 표준[1]	○	○	○	○	○
	충전소 의무설치[2]	○	△	△	△	-

주: * ○는 국가단위, △는 state, province, local 등 지방정부 단위에서 시행
1) 충전소 표준은 충전소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직접 투자 및 공적, 사적 구매 인센티브 포함
2) 충전소 의무 설치 규제는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리노베이션할 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규제
자료: IEA(2021), 「Global EV Outlook 202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미국) 연방정부는 2010년부터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한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정부 차원에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 및 구입 금액의 일부 환급 등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보다 강력한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이 확대되고 있음[6]

● 미국 연방정부는 2010년부터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시 최고 7,500달러의 세액공제[7]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최고 12,5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이 의회에 계류 중

5) 캘리포니아주는 1990년부터 장기적 관점 탄소배출규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전기자동차 판매대수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정책은 스모그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https://ww2.arb.ca.gov/our-work/programs/zero-emission-vehicle-program)
6) IEA(2021), 「Global EV Outlook 2021」
7) U.S. Department of Energy(https://fueleconomy.gov/feg/taxevb.shtml)

➤ 캘리포니아의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에 무공해차 판매 의무 규제(ZEV mandate)를 적용하고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장기임대할 경우 최고 750달러의 환급을 제공하는 등 대다수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세액공제에 더하여 추가적인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 및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적, 기술적 보조를 제공[8)]

➤ 또한 캘리포니아는 2035년까지 모든 새 차와 경량 트럭(passenger light truck)을 무공해차(zero emission vehicle, ZEV)로 바꾸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으며, 뉴욕, 뉴저지, 메사추세츠 역시 이와 유사한 내연기관차 금지 규제를 고려하고 있음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전기자동차 판매 의무 규제 및 구매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무공해차(Zero-Emission Vehicles, ZEVs)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구매보조금, 충전요금 환급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

● 중국 정부의 전기자동차 생산 및 보급 확대의 주요 정책적 수단으로 2010년 도입된 New Electric Vehicle(NEW) mandate[9)]는 2020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자동차 시장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2년까지 연장

➤ NEW mandate이 일몰되는 2023년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무공해차 지원 정책은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않지만,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산업 계획(New Energy Automobile Industry Plan, 2021-2035)은 2025년까지 무공해차의 판매를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10)]

➤ 코로나19 이후 중국 지방정부 중 일부는 팬데믹의 자동차 업계에 대한 타격 감소 차원에서 무공해차 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2020년 중반까지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모든 차종의 판매를 진작시키기도 하였으나, 대다수 지방정부는 무공해차 판매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충전기 설치비용 환급, 통행 제한 예외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11)]

(캐나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ZEV 판매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퀘벡주와 브리티시 콜럼비아주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ZEV mandate을 시행함으로써 중앙정부보다 더 강화된 무공해차 보급 정책을 유지[12)]

● 캐나다 연방정부는 12억 달러 규모의 저탄소 무공해 연료 펀드를 조성하여 저탄소 연료 생산과 사용을 촉진하고 별도의 재정을 통해 무공해차량 구입 보조금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

---

8) Alternative Fuels Data Center(https://afdc.energy.gov/laws)
9) New Electric Vehicle(NEW) 프로그램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연간 판매하는 전체 차량 중 일정 부분(2021년 14%, 2022년 16%, 2023년 18%)을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의 친환경자동차로 판매해야하는 의무 규제로, 자동차 제조업체는 판매한 차종의 연비,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1~3.4 크레딧을 받게되며 해당 크레딧은 업체간 거래가 가능
10) 해당 목표는 2020년 10월 발표되었으며, 2025년까지 무공해차 판매 비중을 25%까지 올리려는 수정안이 고려되고 있음
11) Dongguan, Changsha, Foshan, Ningbo 등의 지방정부는 전기버스 교체 사업 외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 시행에 미온적이나, Shanghai, Tianjin, Beijing 등은 무료 주차, 전기차에 대한 운행제한 예외규정, 충전 보조금 또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등의 다양한 전기차 보급 지원 정책을 시행
12) IEA(2021), 「Global EV Outlook 2021」

(일본) 2020년 10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선언하고 녹색성장전략(Green Growth Strategy)을 통해 수송부문에서 차세대 배터리 개발 등 전기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주력하고 관련 산업에서의 규제개혁 및 수소연료 및 전기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세제 혜택 제공[13)]

- 특히 에너지 연비 규제, 전기자동차의 공공조달, 충전 인프라 및 전기자동차 판매 체인 확장 정책을 통해 2030년 중반까지 모든 승용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하겠다는 계획
  - ➢ 2020년 기준 일본은 자동차 전체 판매 중 전기차 판매 비중이 급격히 떨어진 국가 중 하나로, 2020년 말부터 시행하는 무공해차 취득세 감면 및 기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세금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였으며, 그 결과 2021년 1월 기준 전기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35% 증가

4. 친환경자동차 세제 및 재정지원 관련 정책 방향

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대상의 단계적 전환

각국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과 더불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감면·보조금 지급 등의 재정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전세계 기준 누적 1천만대(2020년)가 보급됨[14)]

- 친환경자동차 1천만대 보급은 2019년보다 43% 증가한 것으로, 이 중 450만대가 중국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다음 순위는 유럽으로 320만대가 운행되고 있음

그러나 친환경자동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제 및 구매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보급 초기와 달리 친환경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구매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

- 우리나라의 경우 하이브리드자동차는 구매보조금을 폐지하고 취득세 및 개별소비세만 지원하고 있으며, 전기·수소자동차는 구매보조금, 취득세 및 개별소비세를 지원하고 있지만 도입 초기에 비해 규모가 감소하였고 일몰 제도를 도입하여 한시적 지원 방식으로 운용
- 중국도 점진적으로 보조금 및 취득세 면제 등을 폐지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2022년까지 지원을 연장하는 대신 보조금 규모를 2019년 대비 10~30% 삭감하기로 함[15)]

13) IEA(2021), 「Global EV Outlook 2021」
14) IEA(2021), 「Global EV Outlook 2021」
15)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인사이트, 제20-10호, 2020.5.18., pp.52~53.

온실가스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수준에 도달하려면, 개인적 차원의 경제성 문제만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성능 개선, 충전 인프라 확충, 기업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 등 정책 대상을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 (우리나라) 내연기관차 수준까지 친환경자동차의 경제성 조기 확보, 배터리 등의 성능 개선, 충전 편의성 등을 확보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세제 및 재정지원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
  - 친환경자동차의 가격이 내연기관차와 유사한 수준을 형성할 때까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유지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해 비재정수단인 보급목표제 등을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16]
  - 내연기관차와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배터리, 수소연료전지 등 핵심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통한 차량가격 저감 기술 등) 개발, 중소·중견 기업의 상용 전기자동차 개발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해당 기술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등 지원 방식의 다양화
- (해외사례) 세계 각국은 자국의 특성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목표에 따른 세제 및 재정지원 정책, 연비 규제, 무공해차 판매 규제 등 단기적 노력 외에도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전기에너지 저탄소 기술 개발지원 등 강화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 중임
  - 독일은 내연기관차의 높은 경쟁력으로 인해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2020년 6월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상향하여 전기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 5~6,000유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 최대 3,750~4,500유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상향함
  - 프랑스는 유럽 최대 친환경자동차 생산국을 목표로 함에 따라 2019년 12월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증액하여 차량가격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3~7,000유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2,000유로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상향
  - 미국 연방정부는 전기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 배터리 용량에 따라 최대 7,500만원의 세액공제 형태로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면서 20만대 이상을 판매한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테슬라는 2020년 1월, GM은 2020년 4월부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수소전기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은 2020년 말 종료되는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감축·유지되고 있으나[17]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보조,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친환경자동차 판매 의무 규제 적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2021년에 경쟁력이 미흡한 수소전기자동차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충전소 인프라 구축,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친환경자동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친환경자동차 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
  - 일본은 승용차 연비 기준을 상향하고 차세대 배터리 개발 등 관련 산업에서의 규제개혁, 수소연료 및 전기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16) 환경부 보도자료(2019.9.8.)
17) U.S. Department of Energy(https://fueleconomy.gov/feg/taxevb.shtml)

나. 유류세 수입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세원 발굴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될 경우 내연기관차를 통해 소비되었던 화석연료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수(유류세)의 감소가 예상됨

- IEA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주요 국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이 시행된다는 시나리오(STEPS)에서는 2030년 순세수 손실액이 400억 달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수준으로 보급이 이루어진다는 시나리오(SDS)에서는 550억 달러의 순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행세를 통해 교통 기반시설의 유지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및 경유의 소비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될 경우 세수 감소가 예상됨

그림 2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사용량 증가로 인한 추가 세수와 유류 소비 감소로 인한 유류세 세수 손실 전망: 2020~20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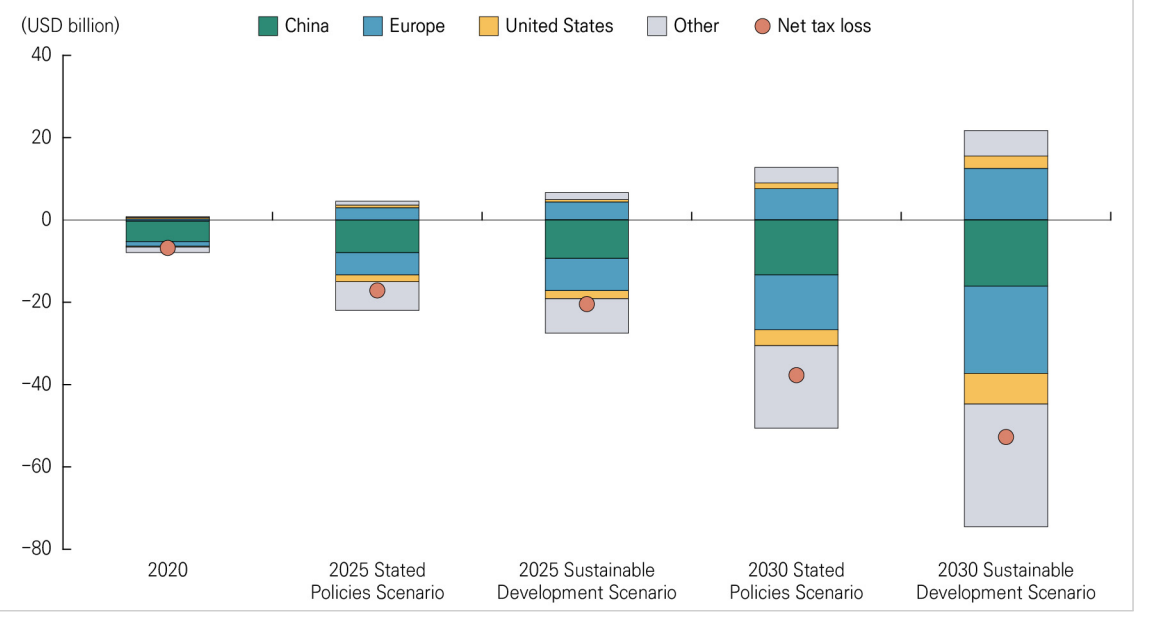

주: 1. Stated Policies Scenario(STEPS, 기발표된 정책 반영 시나리오)
2. Sustainable Development Scenario(SDS, 파리 기후협약 목표 달성하는 지속 가능 시나리오)
자료: IEA analysis developed with the Mobility Model using taxes from IEA Energy Prices

유류세의 경우 대부분 도로 및 수송부문의 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친환경자동차가 보급되더라도 이와 같은 목적의 세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 친환경자동차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이용하지만, 내연기관차의 경우 유류세를 통해 기반시설 이용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반해, 친환경자동차는 이와 관련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
- 각 국가는 내연기관차의 용량 및 화석연료의 소비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과세체계에서 자동차의 중량, 주행거리 등 친환경자동차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과세기준을 적용한 방식 등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다양한 과세방식 개발
  - 미국의 경우 화석연료세는 인상하고, 친환경자동차에도 등록세를 부과하며, 주행거리세(Vehicle Miles Traveled Tax)는 도입 계획 중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과세체계의 도입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목표의 지연 가능성, 행정비용, 안정적 세수 확보가능성, 세부담의 형평성, 수익자 부담원칙 부합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18]

- 기존의 연구 결과[19]에 따르면 신규 도입이 가능한 과세체계는 주행거리세, 자동차 보유세, 탄소세 또는 화석연료에 부과하는 세율 인상, 대체연료세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주행거리세) 교통 관련 기반시설을 위한 재원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행거리 측정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 및 운영 등에 투입되는 비용 등의 단점이 있고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자동차 사이의 경제성 격차를 줄이기 어려워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보유세) 행정비용이 비교적 적고 과세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충분한 세원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수준[20]보다 상향된 과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탄소세) 교정적 목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내연기관 차량이 감소할 경우 안정적 세수 확보가 힘들어질 수 있음
  - (대체연료세) 유류가 아닌 전기소비에 대해서도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으로서, 도로 관련 재원조달에는 유리하지만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증가로 인해 내연기관차와 경제성 차이가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가정용 충전기 사용시 과세가 어렵고 전용에 의한 탈루 가능성이 있음

18) Alan Jenn. 2018. Assessing Alternatives to California's Electric Vehicle Registration Fee. Oakland: Institute of Transportatio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19) 이재현(2019), 친환경차 시대를 대비한 교통세제 개편 사례 연구, 국토연구원
20) 현재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비영업용자동차는 1대당 연간 10만원(교육세 3만원)을 부과하고 있음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 영국편 -

이 미 연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61)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인구고령화 및 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수입보다 지출이 큰 구조) 등으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금개혁의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를 경험한 국가들의 연금 개혁사례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지금까지 독일, 일본, 스웨덴, 캐나다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번 호는 다섯 번째 순서로 1908년에 공적연금을 도입한 이후 사적연금 활성화, 공적연금 통합 등의 연금개혁을 실시한 영국의 사례를 소개

1. 영국의 공적연금제도 도입과 변천

가. 도입기(1908~30년대)

영국의 공적연금제도는 1908년 70세 이상의 저소득자(자산조사 후 선정)를 대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없이 정부가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노령연금을 도입하면서 시작

- 1925년에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여제 방식의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을 도입
  - ➤ 연간 소득이 250 파운드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50%씩 분담하는 기여제 방식
  - ➤ 부과방식으로 1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완전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연금급여는 65세부터 70세까지 정액급여를 지급
  - ➤ 당시 여성은 근로자인 경우가 드물어 수급권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유족연금을 별도로 도입

나. 확대기(1940~70년대)

1946년 국가기초연금(Basic State Pension), 1975년 법정소득비례연금(Statutory Earnings Pension) 등의 도입으로 연금재정 지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

-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구상한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1)]가 1942년에 발표되었고, 이를 토대로 영국은 1946년에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을 제정하여 국민보건서비스와 국가기초연금(Basic State Pension)을 도입
- 국가기초연금은 보편적이고 정액 급여라는 점에서 노인들의 최저 소득을 보장해주는 장점이 있었지만, 수급 제외대상이 많았고 연금급여 수준이 매우 낮았음
- 국가기초연금을 보완하기 위하여 1961년 소득비례연금제도로 부가연금제도(Guaranteed Retirement Pension)를 도입하였으나, 소득과 연동되는 정도가 크지 않은 낮은 수준의 소득비례연금이었음
- 1975년에는 부가연금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로 법정소득비례연금(Statutory Earnings Pension)을 도입하여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연금급여 수준도 제고
  - ➢ 연금급여는 전체기간 중 소득이 가장 높은 20년을 반영하여 산정되었고,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연금급여가 모두 이전되는 등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
  - ➢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이때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에는 하한선(국가기초연금)과 상한선(국가기초연금의 7배) 적용

다. 축소기(1980~90년대)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공적연금제도는 연금급여 수준을 낮추고 수급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 1980년부터는 기초연금의 인상 방식을 임금상승률이 아닌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도록 하고, 1986년 법정소득비례연금에 대하여 전체기간 중 소득이 가장 높은 20년을 반영하던 것을 폐지
  - ➢ 소득비례연금으로 생애소득의 20% 수준(즉, 소득대체율 20%)의 연금급여를 지급
- 1995년에는 2010년~20년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국가기초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합의
- 1998년에는 최저소득보장제도(Minimum Income Guarantee)를 도입하여 전체 연금수급자에게 소득조사 후 최저소득을 보충

1) 베버리지 보고서는 1941년 영국 노동조합총연맹의 청원으로 구성된 정부 부처 간 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실업보험, 연금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검토하고 실행 방안 등을 담아 발표된 것으로 유럽 등 주요 복지국가의 이론적 토대가 된 보고서

- 1999년에는 법정소득비례연금을 국가2층연금(State Second Pension)으로 전환하여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을 강화
-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적용제외(contracting-out)방식[2]이 적용되었는데, 적용제외에 포함되는 사적연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적연금의 가입을 촉진

2. 영국의 공적연금제도 개혁

1980~90년대 축소기를 거치면서 공적연금의 재정은 안정되었으나, 노인빈곤 문제가 점점 심화됨에 따라, 2002년 독립기구로 연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금개혁을 위한 조사 및 자문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연금개혁을 논의하고 추진[3]

- 영국의 연금위원회(Pensions Commission)는 연금제도의 전반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연금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진행
  - 1차보고서는 연금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환경(인구전망, 노인부양비 등), 연금제도 현황 및 문제점(GDP대비 연금지출 비중, 연금액 적정성 등) 등 기초자료 구축
  - 2차보고서는 연금개혁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방안으로 가입이 저조한 사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저축제도(National Pension Savings Scheme, NPSS)[4]의 신설을 제안
  - 두 번째 방안은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정액급부제 제도 도입, 연금액 인상 시 소득상승률에 연동, 수급개시 연령 상향 조정 등을 제안하는 내용
  - 보고서 발표 후, 정부, 기업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회의를 진행
  - 연금위원회의 성과는 연금제도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

2) 공적연금의 소득비례연금(국가2층연금)을 초과하는 연금액을 지급하는 사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 보험료를 면제하는 제도
3) 국민연금공단(2019)의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과정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김원섭(2019)의 「주요국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요건에 관한 연구」, 하세정(2006)의 '영국 연금제도 개혁안: 터너 보고서', 「국제노동브리프」 Vol.4, No.1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4) 모든 피고용자를 일단 자동가입시키는 강제성이 있으나, 가입자에게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납입액을 개인구좌에 예치하고, 이를 가입자가 원하는 투자처에 투자할 수 있음

가. 2007~2008년 개혁

(1) 개혁의 배경

공적연금 축소, 사적연금 강화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노인빈곤율이 급등하자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연금개혁의 필요성 대두

- 1980~90년대의 지속적인 공적연금제도 개편으로 1995년 영국의 노인빈곤율이 32%를 기록하는 등 노인빈곤 문제가 점점 심화
- 사적연금 강화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장점도 있었지만, 정부의 규제가 충분하지 않아 사적연금의 잘못된 판매 문제가 발생
  - ➢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약 50만명이 보험회사의 왜곡된 조언 때문에 사적연금으로 이전하였고 대부분이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남
  - ➢ 사적연금으로의 이전 시 정부의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국민 개개인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보험회사가 총 135억 파운드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함
-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노인빈곤문제 완화를 위한 국가기초연금 급여의 적정 수준 회복, 사적연금 규제 등 공적연금 기능 강화 등에 초점을 둔 연금개혁을 실시

그림 1 2000~2010년 중반 기간의 연금제도 구조

자료: 국민연금공단(2019)의「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과정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2) 주요 개혁내용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하여 완전연금 수급요건 기간 단축, 크레딧 확대, 소득에 연동한 급여 인상 등 국가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추진

- 국가기초연금의 완전연금을 위한 가입기간을 남성 44년, 여성 39년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30년으로 2010년 4월부터 단축
  - ➤ 완전연금 수급을 위한 기여기간을 단축하면, 기존에 감액된 연금을 받던 사람이 완전연금 수급이 가능해짐
-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30년 이상 자녀 양육 혹은 노인 부양 등 돌봄노동에 대한 연금크레딧을 확대 적용하여 완전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여성의 연금 수급권 강화에 크게 기여
- 급여를 2011년 4월부터 물가상승률이 아닌 소득(earnings)에 연동시키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국가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일부 개선
  - ➤ 개인은 국가기초연금의 수급을 위하여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해야 하는 조건을 폐지

국가2층연금의 크레딧 도입, 사적연금 제도 정비, 연금수급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 등으로 공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안정을 도모

- 국가2층연금에도 국가기초연금과 같이 자녀 양육과 노인 돌봄 등 돌봄노동에 대한 크레딧을 도입하고 2012년 4월부터 사적연금과의 적용대체 금지
  - ➤ 기존에는 사적연금과 국가2층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도록 하는 적용제외(contracting-out)[5] 방식이었음
- 한편, 사적연금 가입활성화를 목표로 2012년부터 자동으로 가입되는 개인계좌제도(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를 도입
  - ➤ 2012년부터 22세부터 연금수급 연령까지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 ➤ 보험료는 사용자, 피용자, 정부가 분담하는 형태이고, 사용자는 최소 3%를 기여하여야 하며, 피용자가 4%를 기여하고, 정부는 세제혜택의 형태로 약 1%를 보조
- 국가기초연금과 국가2층연금 모두에 적용되는 개혁안으로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수급연령을 상향 조정
  - ➤ 여성의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2020년까지 65세로 남성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이후 성별과 관계없이 기초국가연금의 수급연령을 2024년 4월부터 2046년 4월까지 65세에서 68세로 상향조정

5) 공적연금의 소득비례연금(국가2층연금)을 초과하는 연금액을 지급하는 사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 보험료를 면제하는 제도

나. 2014년 개혁

(1) 개혁의 배경

2007~2008년의 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자 영국 정부는 모수적 개혁 방안과 구조적 개혁 방안[6]을 검토

- 영국의 복잡한 연금제도는 개인들이 향후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예측을 어렵게 하여 불확실성의 문제를 야기
  - ➢ 집권당이 바뀔 때마다 연금제도가 바뀌면서 복잡하게 되었고, 자산조사를 거쳐야만 수급이 가능한 급여들이 많아 연금제도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킴
- 형평성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의 연금 불평등이 존재하였고 자영업자들은 국가2층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제기
- 이에 영국 정부는 모수개혁 방안으로 추가 국가연금의 급여수준 상향, 구조개혁 방안으로 국가기초연금과 국가2층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2) 주요 개혁내용

연금제도를 단순화할 수 있으며, 저축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영국 정부는 국가기초연금과 국가2층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 방안을 추진

- 1층 국가기초연금과 2층 국가2층연금을 통합하여 신국가연금(New State Pension)으로 일원화
  - ➢ 2016년 4월 이후 신규수급자부터 신국가연금을 적용하고, 이전 기간의 수급자에게는 기존의 국가기초연금과 국가2층연금 적용

공적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피부양 배우자 연금제도 폐지,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완전연금 수급요건 기간 강화, 사적연금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

- 전업주부를 주 대상으로 운영되었던 피부양 배우자 연금을 폐지하는 대신 확대 강화된 크레딧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서 전업주부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유지
- 수급개시연령을 2026년~2028년 사이 67세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앞당기고, 2015년부터 5년마다 정기적으로 기대여명과 연계하여 연금수급 연령의 상향 조정을 검토
  - ➢ 이전의 연금개혁에서 2034~36년 사이에 67세, 2044~46년 사이에 68세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
- 최소가입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완전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30년에서 35년으로 강화
-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계좌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

6) 모수적 개혁은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등 제도의 부분적인 요소를 변경하는 것이고, 구조적 개혁은 제도의 통합 등 구조를 바꾸는 것을 말함

3. 영국의 현행 공적연금제도 현황

여러 차례에 걸친 연금제도의 변화 및 개혁의 결과로 운영되고 있는 2022년 현재 영국의 공적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음

가. 연금제도 개요[7)]

영국의 연금제도는 2014년 연금개혁 방안이 실행된 2016년 4월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제도가 공존하며, 연금크레딧과 신국가연금이 공적연금에 해당

- 0층은 연금크레딧, 1층은 개혁 이전에는 국가기초연금이었으나, 개혁 이후에는 2층의 국가2층연금을 폐지하고 일원화하여 신국가연금으로 전환
  - ➤ 0층에 위치하는 연금크레딧은 2022년 현재 66세를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국가가 정한 최저 수준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을 보충하는 방식
  - ➤ 1층에는 16~64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국가연금이 위치하며, 수급개시연령은 2022년 현재 66세이고 최소가입기간은 10년이며 완전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35년 이상의 가입기간 필요
  - ➤ 2층과 3층은 사적연금 부분으로 2층에는 자동등록 방식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반드시 사적연금을 제공하도록 하여 사실상 준강제적 성격을 띰

그림 2 2022년 현재 영국의 연금제도 구조

자료: 국민연금공단(2019)의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과정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7) 김원섭(2019)의 「주요국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요건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OECD '한 눈에 보는 연금'의 주요지표 시계열 분석에 기초한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연금크레딧은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수급자를 선별하며, 세후 소득과 재산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하여 산출하고 적정수준 소득과의 차액을 급여로 지급

- 2021년 기준으로 주 소득평가액이 단독인 경우 177.10파운드, 부부인 경우 279.30파운드 미만

신국가연금은 가입유형 및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하고, 적립기금이 거의 없는 완전부과방식에 기초하여 운영

- 영국의 경우 사회보험이 사회적 위험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이라는 단일한 사회보험으로 통합되어 있고 국민보험에서 신국가연금을 비롯한 다양한 급여와 기타 수당을 지급[8)]
- 가입대상은 16세 이상의 일정소득(2021년 기준 주당 184파운드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표 1 신국가연금을 포함한 국민보험 가입유형 및 적용대상(2021~22년 기준)

구분	대상		보험료	
			근로자	사용자
Class 1	연금수급연령 미만의 근로자	주 120파운드 미만	가입대상 제외	
		주 120~184파운드	0%	
		주 184~967파운드	12%	13.8%
		주 967파운드 이상	2%	13.8%
Class 2	저소득 자영자 (연소득 6,515파운드 미만 납부면제)		주당 3.05파운드	
Class 3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1, 2유형에 적용하지 않는 자로 자발적 가입		주당 15.40파운드	
Class 4	고소득 자영자	연소득 9,568~50,270파운드	9%	
		50,270파운드 이상	2%	

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ates-and-allowances-national-insurance-contributions

- 수급권자는 1951년 4월 6일 출생한 남성과 1953년 4월 6일 출생한 여성부터 적용하고, 이전 출생자들은 기존 국가기초연금과 국가2층연금의 적용을 받음
  - ➢ 2022년 현재 66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2026~2028년 67세로 상향될 예정
- 신국가연금 급여 산식은 완전연금에 기여년수(크레딧 기간 포함)를 곱하고 여기에 다시 1/30을 곱한 급여를 받게 되는데, 2019년 기준으로 주당 완전연금은 164.35파운드
  - ➢ 신국가연금의 완전연금인 164.35파운드는 평균임금의 24.1% 수준

8) 노호창(2018), '영국의 실업부조제도', 「국제노동브리프」 2018년 5월호, pp.9~23.

- 급여수준 유지를 위해 급여 연동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하였으며 2011년부터 물가, 임금, 2.5% 가운데 가장 높은 지수를 적용하는 삼중보안제도(Triple Lock)을 시행 중
- 당해 연도 지출을 당해 연도 보험료 수입을 통해 조달하는 완전부과방식으로 운영 중

나. 공적연금제도 현황

연금크레딧 수급자 수는 2020년 8월 기준으로 1,492,000명이고 평균 급여는 주당 64.01파운드(원화 96,847원)이며 최근 5년(2016~2020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2.3%

표 2 연금크레딧 주당 평균 급여: 2016~2020년

(단위: 파운드, 원)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증가율
연금크레딧	57.47 (90,113)	58.18 (84,303)	58.5 (85,878)	60.86 (90,986)	64.01 (96,847)	2.3%

주: 괄호()의 숫자는 원화로 환산한 값으로 적용한 환율은 한국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환율(1 파운드는 2016년 1,568원, 2017년 1,449원, 2018년 1,467원, 2019년 1,495원, 2020년 1,513원)
자료: 영국 Pensions Policy Institute (2021),「Pension Facts June 2021」

신국가연금 수급자 수는 2018년 8월 기준 약 1,300만명이고, 평균 급여는 2019년 기준 주당 148.36파운드(원화 221,793원)로 완전연금액 대비 90% 수준

표 3 2016년 4월 이전 수급자의 주당 평균 급여와 신국가연금 주당 평균 급여: 2019년

(단위: 파운드, 원)

	2016년 4월 이전		2016년 4월 이후	
	국가기초연금	완전연금액 대비 비중	신국가연금	완전연금액 대비 비율
남성	116.56 (174,257)	93%	149.02 (222,785)	91%
여성	103.37 (154,538)	82%	145.85 (218,046)	89%
전체	108.98 (162,925)	87%	148.36 (221,798)	90%

주: 괄호()의 숫자는 원화로 환산한 값으로 한국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환율(1 파운드는 2019년 기준 1,495원) 적용
자료: 영국 Pensions Policy Institute (2021),「Pension Facts June 2021」

공적연금(연금크레딧, 신국가연금 등) 지급을 위한 재정지출은 2017~18년 회계연도 기준 1,060억 파운드(원화 155조원)이고 GDP대비 5.1%

- 영국 정부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공적연금 재정지출은 2037년에 1,800억 파운드(원화 264조원)까지 증가하고 GDP대비 5.9%에 이를 것으로 전망

표 4 공적연금 재정지출 전망: 2017~2037년

(단위: 십억 파운드, 조원)

	2017	2022	2027	2037
공적연금 재정지출	106 (155)	112 (164)	123 (180)	180 (264)
GDP대비 비율	5.1%	5.0%	5.0%	5.9%

주: 괄호()의 숫자는 원화로 환산한 값으로 한국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환율(1 파운드는 2018년 1,467원) 적용
자료: 영국 Pensions Policy Institute (2021),「Pension Facts June 2021」

[참고] 연금수급액 중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비중 변화

- 연금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을 구성하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비중은 1997년에는 공적연금 55%, 사적연금 45%
- 2002년에 공적연금의 비중이 57%로 가장 높았고, 연금개혁 과정에서 점차 그 비중이 낮아져 2019년 기준으로 51% 기록
- 반면, 사적연금은 2019년에 49%로 가장 높았고 이는 가장 낮았던 2002년 43%에 비하여 6%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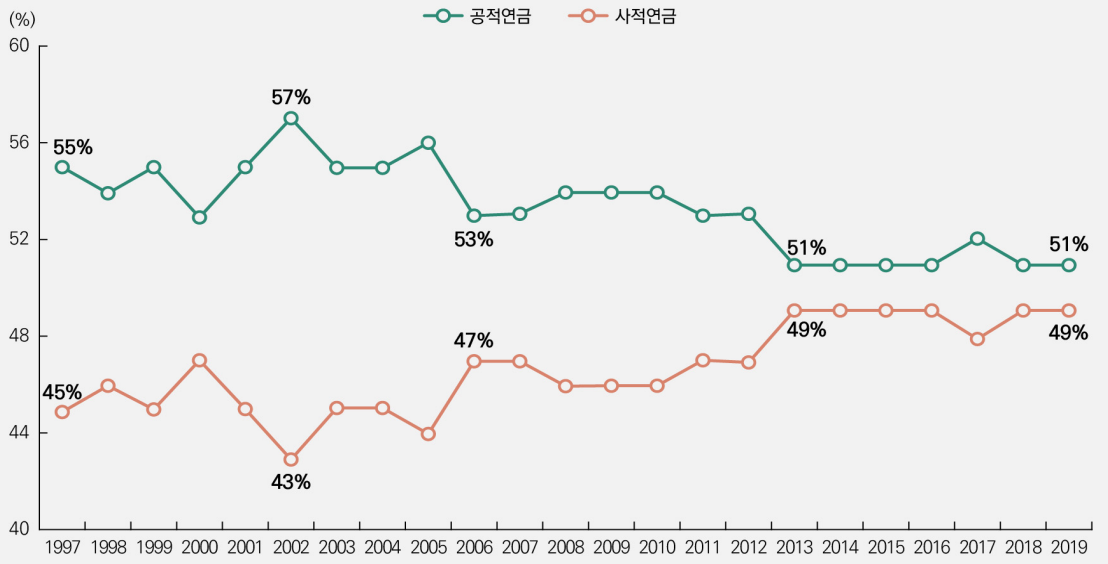

자료: 영국 Pensions Policy Institute (2021),「Pension Facts June 2021」

4. 공적연금개혁의 성과와 한계

영국의 공적연금개혁의 성과는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로 노인빈곤율을 개선하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정부의 부담 완화

- 2016년 4월에 도입된 신국가연금은 기존의 국가기초연금보다 높은 연금급여를 지급하여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
  - ➤ 2020년 4월 기존 국가기초연금의 완전연금액은 134.25파운드이지만 신국가연금의 완전연금액은 주당 175.20파운드로 1.31배 높음
  - ➤ 향후 재정전망에서도 신국가연금의 완전연금액이 기존 국가기초연금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2040년 1.58배 높음)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

표 5 신국가연금과 국가기초연금의 완전연금액 비교: 2020~2040년

(단위: 파운드, %)

연도	2016년 4월 이전		2016년 4월 이후		비교 (B/A)
	국가기초연금(A)	근로자 평균 소득 대비	신국가연금(B)	근로자 평균 소득 대비	
2020	134.25	19.0	175.2	24.8	1.31
2021	137.60	19.0	179.0	24.8	1.30
2022	141.30	19.0	184.45	24.9	1.31
2025	153.80	19.0	200.75	24.8	1.31
2030	184.40	19.1	240.65	24.9	1.31
2035	224.35	19.3	292.85	25.2	1.31
2040	227.50	19.7	359.70	25.7	1.58

자료: 영국 Pensions Policy Institute (2021), 「Pension Facts June 2021」

- 연금크레딧 도입, 사적연금 강화 등으로 노인빈곤율이 1990년대 중반 25~27%에서 2017년 16%까지 하락
  - ➤ 1999년 연금크레딧을 도입하여 연금수급권이 없는 노인들의 소득을 부조하기 시작하면서 노인빈곤율이 하락하기 시작
  - ➤ 2011년에는 연금인상방식에 삼중보안제도[9]를 도입하여 급여의 현재가치를 보장하고, 사적연금의 확대로 연금소득이 증가하면서 노인빈곤이 완화
- 공적연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재분배 역할에 집중하고, 사적연금은 중산층 이상 등 경제력 있는 개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제도 개편
- 사적연금의 경우, 2012년 10월부터 자동가입방식이 시행되면서 사용주가 반드시 사적연금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준강제적 연금제도로 강화되어 공적연금제도를 보완

9) 물가, 임금, 2.5% 가운데 가장 높은 지수를 적용

다만, 복잡한 기존 제도에 신 제도의 도입을 병행함으로써 행정적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고, 사적연금의 다양한 급여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1인당 평균 노후소득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신국가연금제도로 완전히 일원화 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기존 국가기초연금 등과 병행하고 있어 수급자 입장에서 본인의 노후소득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사적연금의 경우, 판매회사마다 급여산정방식, 기여율 등이 상이하여 급여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워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평균 노후소득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영국 사례는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여 연금개혁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각각의 역할에 맞게 기능을 최대화하여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이 가능함을 보여줌

- 연금위원회에서 연금과 관련된 복잡한 정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여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음
-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초점을 두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여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불안정 문제를 조기에 완화시킬 수 있었음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이 정 훈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7)

총수입·총지출(분기별·월별 누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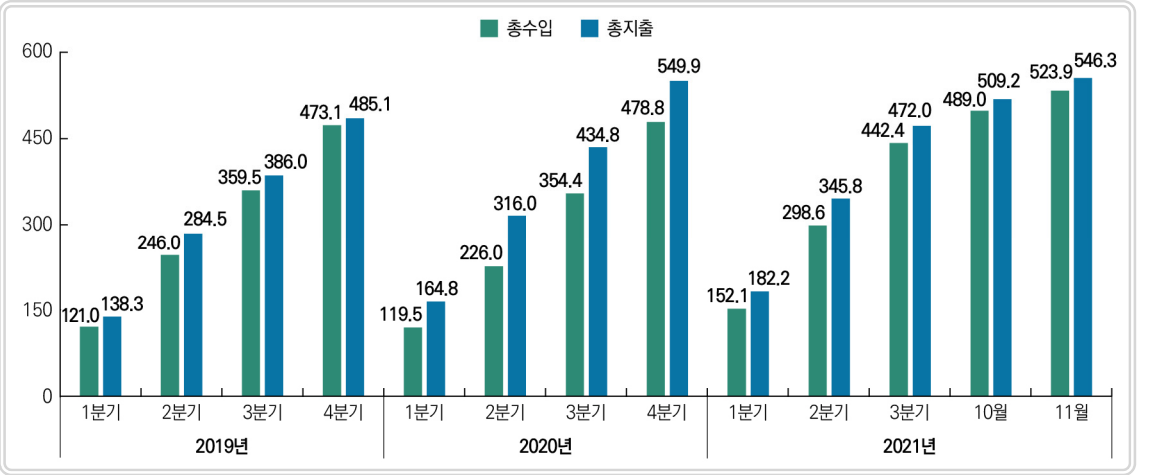

주: '21.12월 총수입·총지출은 정부 결산이 완료된 이후 확정 발표 예정('22. 4월초)
자료: NABOSTATS – 간략조회 – 재정통계 – 재정총량 – 총수입·총지출 (www.nabostats.go.kr)

재정수지(월별 누계)

(단위: 조원)

주: '21.12월 재정수지는 정부 결산이 완료된 이후 확정 발표 예정('22. 4월초)
자료: NABOSTATS – 간략조회 – 재정통계 – 재정총량 – 재정수지 (www.nabostats.go.kr)

국세 실적(월별 누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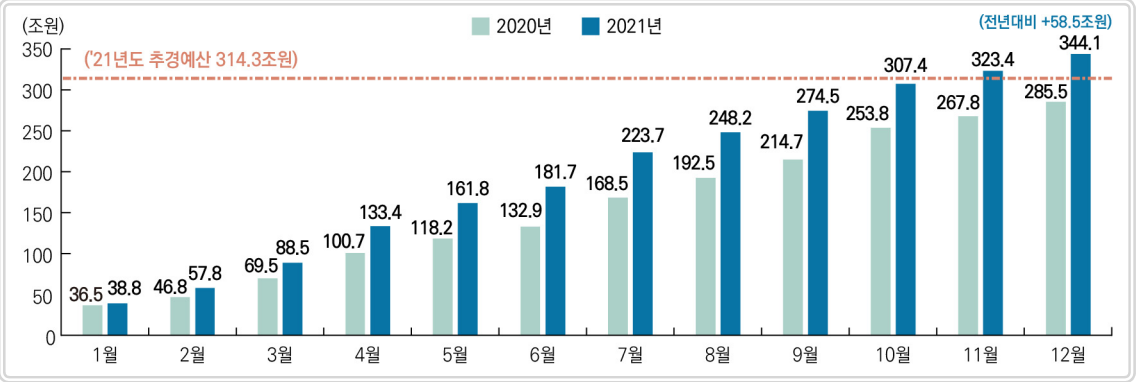

세외수입 실적(월별 누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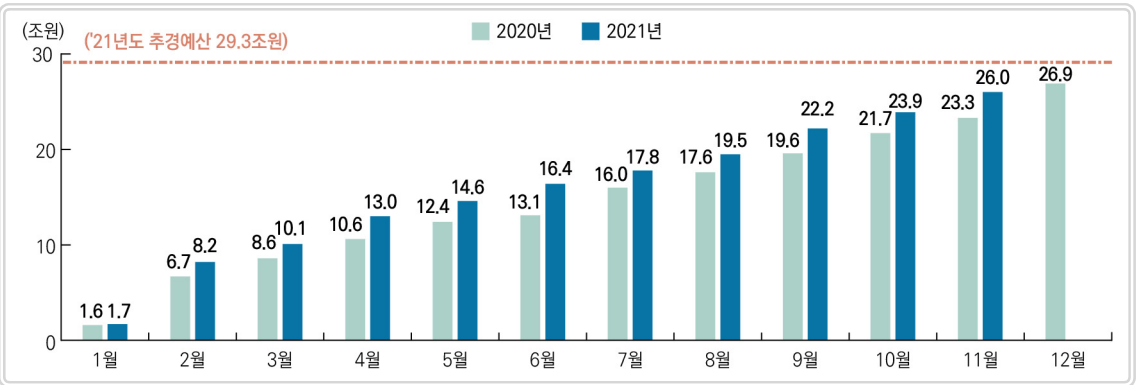

기금수입 실적(월별 누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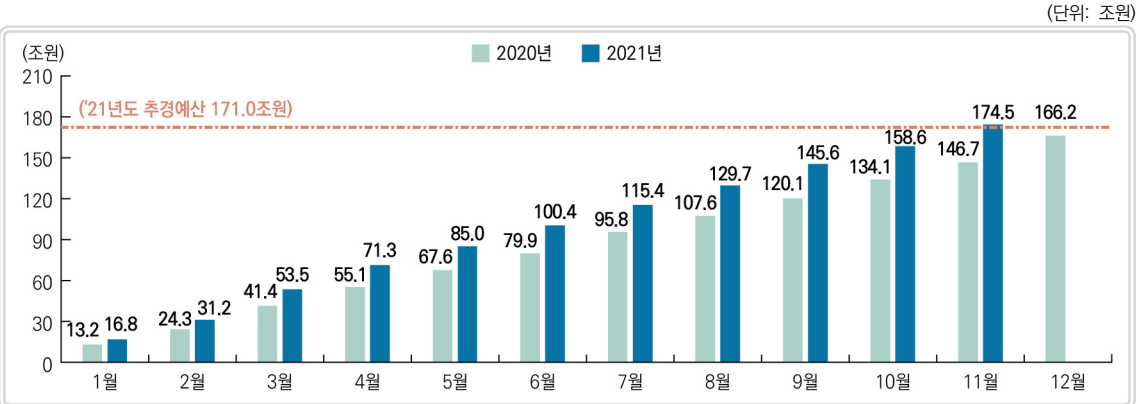

주: 1) '21년도 추경예산액은 2차 추경 기준
2) '21.12월 세외수입·기금수입 정부 실적은 결산이 완료된 이후 발표 예정('22. 4월초)
자료: NABOSTATS – 간략조회 – 조세통계 – 기초통계 – 진도율(월별 누계/전년동기대비) (www.nabostats.go.kr)

국민부담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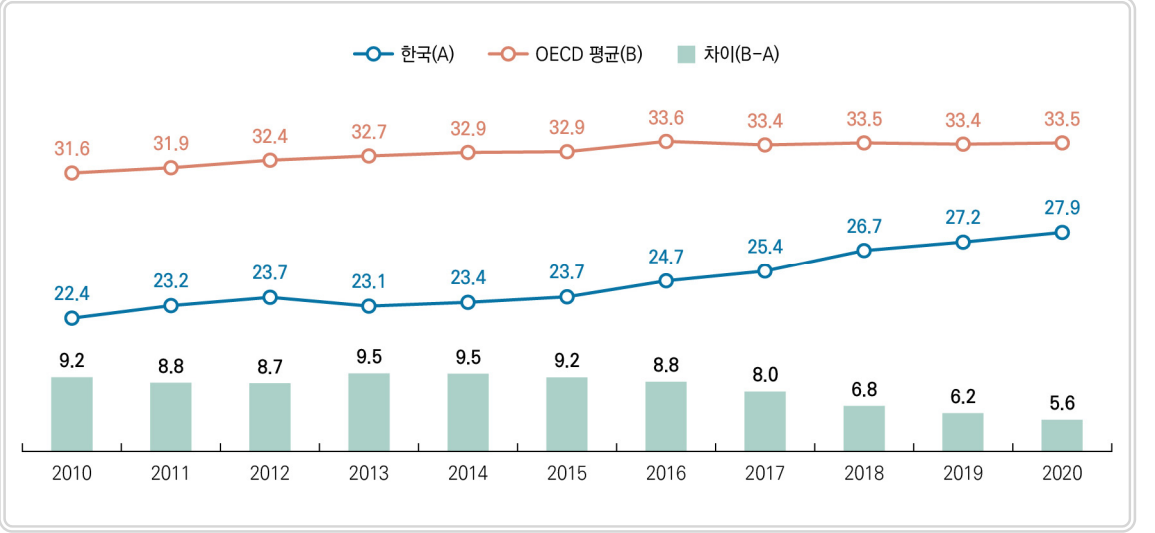

주: 1) 국민부담률은 명목GDP 대비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합의 비율
2) OECD 평균은 2021년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38개국 기준이며, 2020년 미발표국가(일본, 호주)의 경우 전년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자료: NABOSTATS – 간략조회 – 조세통계 – 국제비교 – OECD국가들의 국민부담률(www.nabostats.go.kr)

조세부담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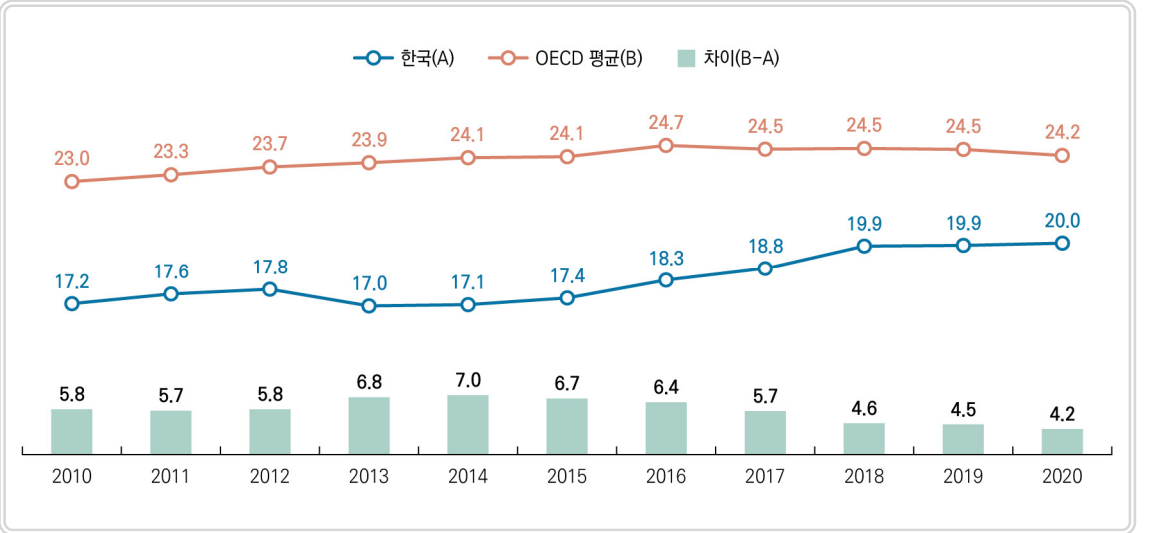

주: 1) 조세부담률은 명목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
2) OECD 평균은 2021년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38개국 기준이며, 2020년 미발표국가(일본, 호주)의 경우 전년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자료: NABOSTATS – 간략조회 – 조세통계 – 국제비교 – OECD국가들의 조세부담률(www.nabostats.go.kr)

소득세율(최고세율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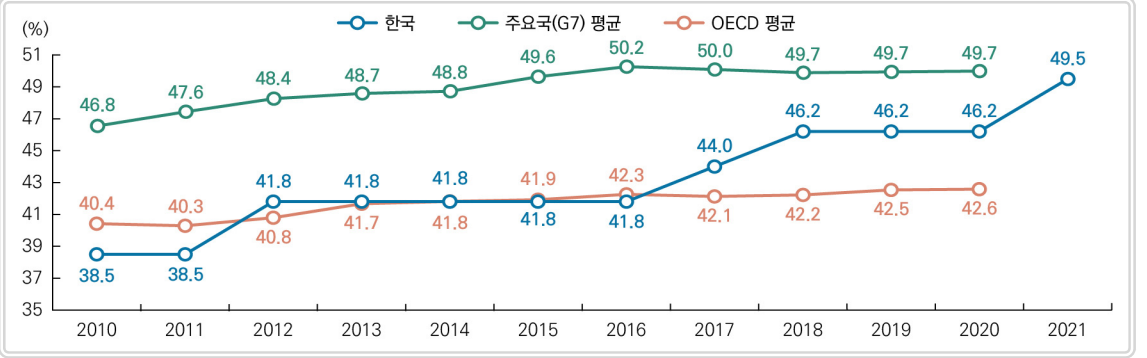

법인세율(최고세율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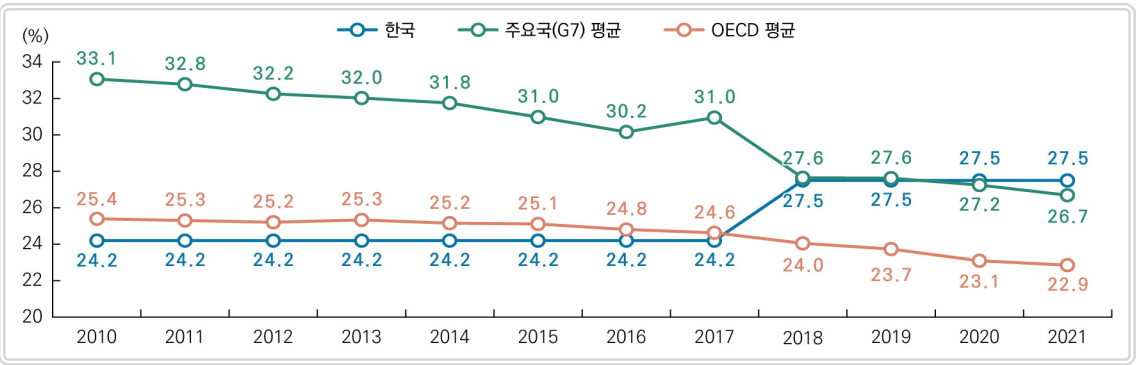

부가가치세율(표준세율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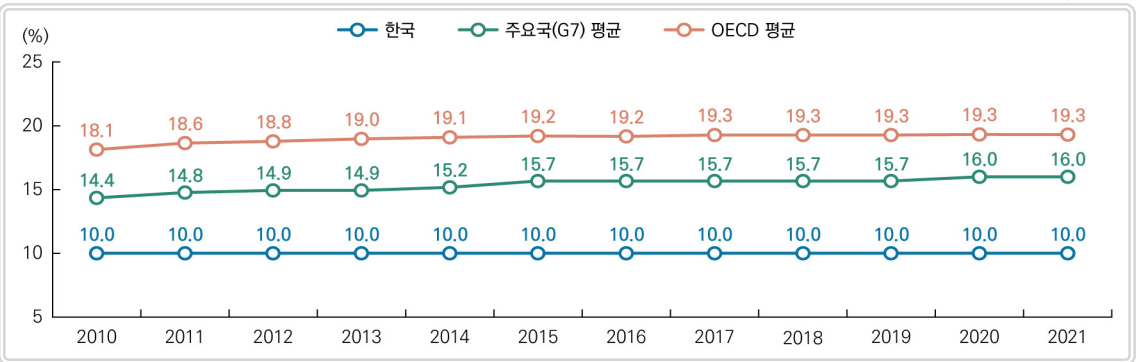

주: 1) OECD 평균은 '21년 5월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37개국 기준
2) 소득세와 법인세는 최고세율 기준이며, 지방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포함
3)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 기준(미국의 판매세는 제외)

자료: NABOSTATS – 간략조회 – 조세통계 – 국제비교 – OECD국가들의 소득세 명목최고세율/법인세 명목최고세율/부가가치세율(www.nabostats.go.kr)

nabo Fiscal Estimates & Tax Issues
재정추계&세제 이슈

발행일	2022년 2월 28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경성문화사(02-786-2999)

ISSN 2799-9408
발간등록번호 31-9700489-001941-08
© 국회예산정책처, 2022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89-001941-08
ISSN	2799-9408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